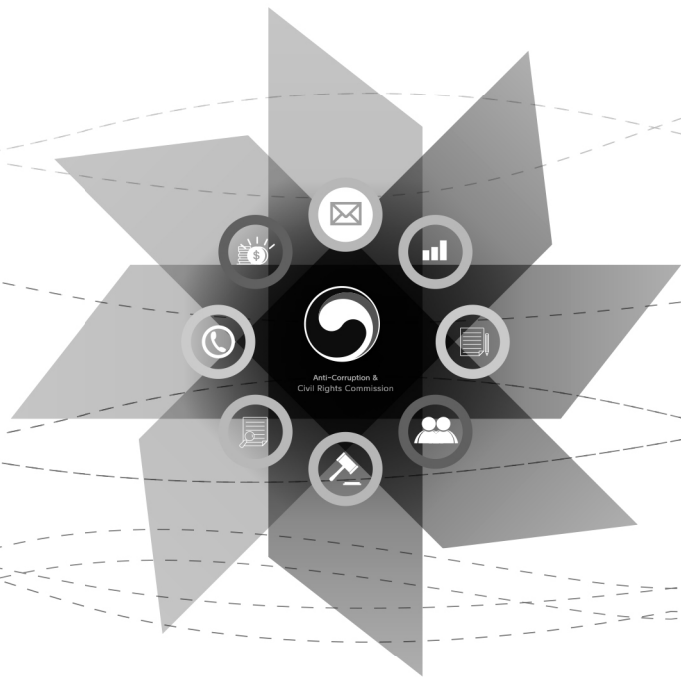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공개 토론회

2017. 11. 1.(수) 14:00~16:30

서울여성프라자 아트홀



국민권익위원회

진행순서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개회식	10'	■ 개회선언 ■ 국민의례	윤효석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 인사말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참석자 소 개	5'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20'	■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김원영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지정토론	80'	■ 연구기관 ·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유관단체 · 고창현(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설광호(준법감시협의회장) ■ 시민단체 ·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박경준(시민권익센터 위원장)	토론 진행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1인 약 10분)
자유토론	20'	■ 토론자 및 일반 참석자 (질의응답)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폐회 및 정리	15'	■ 폐회선언	윤효석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CONTENTS

I. 발 제 문

- ▶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7

김원영(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II. 지정토론

- ▶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43
- ▶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51
- ▶ 고창현(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변호사) 73
- ▶ 설광호(준법감시협의회장) 79
- ▶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87
- ▶ 박경준(시민권익센터 위원장) 97

발제문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김원영(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목 차

I . 추진배경	11
----------------	----

II . 일반현황	12
-----------------	----

III . 주요내용	16
------------------	----

1. 사 외 이 사	16
------------------	----

2. 준법감시인	32
----------------	----

[붙임] 1.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제도 연혁

2. 최근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정부법안 주요내용(금융위)

I. 추진배경

-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기업내부의 의사결정기구가 다시 한번 지배주주의 전횡, 외부청탁 등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
- 그동안 정부가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각종 준법경영시스템을 도입·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미흡한 실정

※ 준법경영시스템 : 사외이사('98.2월), 준법감시인('00.10월), 외부감사인('80.12월)

- 사외이사제도는 도입된 후 20년 남짓 운영되었음에도 지배주주의 견제·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거수기’ 논란을 초래

※ 1998.2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도입

- 준법감시인제도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부정 행위 감시 등을 위해 도입된 이래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발생

※ 최근 5년간('11~'15) 금융사고(횡령, 유용, 배임 등) 현황 : 876건(1조2,500억원)

- 또한 연이은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국제사회의 국내 회계감사 투명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만연

※ '1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감사 적절성’ 평가 : 전체 63개국 중 63위 기록

**최근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정부 법안(「외부감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17.9.28)로 「외부감사인 개선사항」 제의**

- 이와 관련 관계부처,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필요

II. 제도현황

사외이사

- (정의) 회사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진(지배주주)의 전횡방지 및 제3자의 입장에서 회사경영을 견제·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

※ 근거법령 :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의 구성)

📖 사외이사제도

- ▶ '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이사회 독립성 역할 강화를 위해 도입
- ▶ '98년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유가증권 상장규정) 된 이후 구성, 결격요건, 성과보상 모범규준 등이 제정되는 등 제도가 강화

□ 회사 유형별 선임기준

회사유형	세부유형	선임비율	근거법령
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회사 등 제외	이사 총수의 1/4 이상	상법 제542조의 8
대규모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금융지주회사	전체		
은행			
보험회사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이사 총수의 1/4 이상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 선임절차

- 대규모 상장회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인 이상,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구성, 후보 추천
- 금융회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3인 이상,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구성, 후보 추천

□ 선임현황

구 분	유가증권 상장회사	코스닥 상장회사	금융회사
대상회사	732	1,057	109
사외이사 선임회사	728	949	109
사외이사수	1,771	1,521	447
1개 회사당 사외이사수	2.43	1.60	4.10

※ 출처 : 상장회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 '15. 3월 기준), 금융회사(경제개혁연구소, '16. 6월 기준)

【참고】 정부의 최근 관련법령 개정 추진동향

▶ 법무부 :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17.10.19)

-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정부안 추진

▶ 국 회 : 20대 국회 「상법」 개정 법률(안) 40개 계류 중

-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중립적 구성,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등

준법감시인

□ (정의) 경영진 입장에서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

※ 근거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준법감시인제도

-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취약성개선을 위해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 도입(2000년 10월)
- 주로 증권사나 투신사 등에서 직원들이 자산관리, 위험관리, 고객관리 등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직원의 불공정행위를 감시
-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화, 신용금고는 2001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이후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에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상법 제542조의 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개정('12.4월 시행)

□ 금융회사 유형별 선임기준

회사유형	인원	선임대상
금융회사 일반	1명 이상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상호저축은행(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직원 중 선임 가능
금융투자업자(자산총액 2조원 이상)		
보험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	예외	예외
투자일임재산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 선임절차

○ 이사회 의결로 선임(임기 2년 이상)

※ 해임시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선임현황

구 분	금 융 투자업	은 행	보 험	저축은행	여 신 전문업	금 융 지주회사	농협
회 사 수	157	18	27	79	22	10	1
선임여부	선임	선임	선임	선임	선임	선임	선임

※ 출처 :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6, 한양대학교)

【참고】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제도 모범규준(‘15.9.17 금감원 발표)

▶ 적용대상 : 은행, 외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주요내용

-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 등 내부통제조직 구성 명시 (제4조)
- 준법감시인 임면, 자격, 임기 및 지위, 권한과 의무 등 규정(제11조~제14조)
- 준법감시부서, 준법감시 전담인력 확보, 부·점별 준법감시 담당직원 임명, 해외지점 등 내부통제 담당직원 임명근거 마련(제16조~제19조)
- 준법감시체계 구축,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및 법규준수 여부 사전 검토.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등 의무 부여(제21조~제27조)

Ⅲ. 주요내용

사외이사

【문제점】

가. 사외이사에 의한 지배주주 등의 견제·감시가 불가능한 선임 구조

- 지배주주 등은 ‘전직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각종 위·탈법 행위, 세무조사 등 문제해결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경향 일반화

※ 최근 10년간('06~'15) 30대 그룹총수의 각종 위법행위(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로 인한 실형선고 8건 발생

<주요 대기업 그룹총수의 위법행위 현황>

그룹	총수	형 확정일	사유	그룹	총수	형 확정일	사유
두산	박○만	'06.07.21	횡령	삼성	이○희	'09.08.14	배임·조세포탈
두산	박○성	'06.07.21	횡령	동부	김○기	'09.10.29	배임
SK	최○원	'08.05.29	부당내부거래	SK	최○원	'14.02.27	횡령
현대차	정○구	'08.06.03	횡령·비자금조성	CJ	이○현	'15.12.15	배임·횡령·조세포탈

※ '14년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이후 '16년도 롯데, 삼성, 효성, 신세계, SK, 대림, 두산 등의 그룹 계열사 내부거래규모가 16.9~18,467.2%까지 크게 증가('17.8월 CEO스코어)

※ '17.3월 기준 30대 그룹 관료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43.2% 차지(법원·검찰, 청와대, 국세청·관세청, 기재부, 공정위·금감원출신 순, '17.8월 CEO스코어)

<주요 그룹의 관료출신 사외이사 선임현황('17.8월 CEO스코어)>

그룹	계열사수	관료출신/사외이사	비율(%)	그룹	계열사수	관료출신/사외이사	비율(%)
두산	6	19/25	76.0	신세계	8	13/24	54.2
롯데	16	33/53	62.3	효성	7	9/17	52.9
대림	4	6/11	54.5	삼성	15	25/56	44.6

- 특히, ‘**법조인 사외이사**’를 지배주주, 계열회사 등의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 목적으로 선임하고 있어 견제·감시역할과 이해충돌 발생

☞ 사외이사 결격사유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현재 결격사유도 ‘주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송무는 제외**되어 있어 손쉽게 법적 구속력을 회피할 가능성 상존

- (사례1) 삼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의 소송 다수, 계열사 상장, 구조조정 등으로 법률자문 받을 일이 많아 대형 로펌소속 사외이사 지속적 총원
- (사례2) 효성그룹은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로펌소속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총원
- (사례3) 롯데그룹은 형제의 난 이후 호텔롯데 상장, 롯데그룹 지배구조 법률자문 등을 맡은 로펌소속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총원

- 현재 변호사법에도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겸직 및 수임제한 규정이 없어 법조인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 만연

☞ 「변호사법」 겸직제한

- 제38조(겸직제한) 보수를 받는 공무원,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가 필요한 행위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 제31조(수임제한) 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 : ①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②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③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주요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관련 사외이사 현황('16.6월 기준, ERRI 경제개혁리포트)>

소 속	성 명	최초선임일	비 고
삼성자산운용	손○옥	2012.06.05 (현재 연임)	▶ 이건희-이맹희 소송에서 이맹희 대리(~2014) ▶ 삼성차-채권단 소송에서 채권단 대리(~2015) ▶ 법무법인 화우 고문(2011~현재)
	안○옥	2014.03.14	▶ 이건희-이맹희 소송에서 이건희 대리(~2014) ▶ 삼성SDI-제일모직 합병, 제일모직 상장 자문(2014) ▶ 삼성-한화 빅딜 자문(2014~2015) 등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08~현재)
삼성카드	박○문	2015.03.13	▶ 이건희-이맹희 소송에서 이건희 대리(~2014) ▶ 법무법인 원 대표(2009~현재)
	양○용	2014.03.14	▶ 삼성물산 소송(2014), 삼성전자 소송대리(2013~2014) ▶ 법무법인 울촌 고문(2010~현재)
삼성증권	문○태	2016.03.11	▶ 삼성생명의 삼성자산운용 지분인수 및 삼성선물 지분 매각 자문(2014) ▶ 이건희-이맹희 소송에서 이건희 대리(~2014) ▶ 법무법인 세종 고문(2011~현재)
삼성생명	윤○로	2015.03.13	▶ 삼성생명의 삼성자산운용 지분인수 및 삼성선물 지분 매각 자문(2014) ▶ 이건희-이맹희 소송에서 이건희 대리(~2014) ▶ 법무법인 세종 고문(2015~현재)
삼성화재	손○조	2012.06.05 (현재 연임)	▶ 이건희-이맹희 소송에서 이건희 대리(~2014) ▶ 삼성SDI-제일모직 합병, 제일모직 상장 자문(2014) ▶ 삼성-한화 빅딜 자문(2014~2015) 등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2010~현재)
효성캐피탈	김○희	2015.10.28	▶ 조석래회장 형사사건 1심 소송대리(~2014.3)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렬	2015.10.28	▶ 조석래회장 형사사건 1심 소송대리(~2014.3)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10~현재)
	서○희	2015.10.28	▶ (미)석유화학업체 UOP- (주)효성 소송에서 (주)효성 대리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006~현재)
롯데손해보험	문○우	2016.03.18	▶ 호텔롯데 상장, 롯데그룹 지배구조 법률자문(2015) ▶ 법무법인 울촌 고문(2013~현재)

○ 또한 ‘**대학교수 사외이사**’도 지배주주 등에게 우호적인 인사 위주로 선임되고 있어 기업경영 견제·감시 역할 소홀

※ '17년 10대 그룹 상장사 대학교수 사외이사 선임·재선임 확인결과 : 삼성(13명, 56.5%), SK(11명, 45.8%), LG(9명, 69.2%), 롯데(8명, 61.5%) 순

※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이나 경영권 승계 등 지배주주 관련 주요안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

■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최모교수는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재임 중 **SK씨앤씨와의 과도한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음에도 이사회에 56차례 참석(출석률 94.9%), 100% 찬성의견 표명(최모교수의 사외이사 연봉은 6,500만원, 이 외에 GS건설 사외이사(연봉 6,000만원) 겸직

■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오모교수는 2013년 10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재임 중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강판사업 인수 안건에 찬성 표결, 이로 인해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새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룹 경영권 승계에 기여**

- 특히,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해당기업 또는 관계계열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초래

※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시립대, 연세대, 부산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외이사 겸직기간 포함 전·후 2년 이내 기간의 연구용역 수주를 금지하는 규정 없음

☞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5호 : 사외이사 등 겸직교원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대 송모교수는 '06년부터 '14년까지 아모레퍼시픽 사외이사로 재직 중에 '14년 '아모레퍼시픽 임원 육성과정 연구' 용역으로 5억7천만원 수주. 또한 '10, '11년에 '롯데그룹 임원 육성 관련 과정 설계 연구 및 과정운영 자문' 용역 후 '12년 롯데제과 사외이사로 선임

■ 서울대 신모교수는 '12.9월 인피니트헬스케어 사외이사로 선임 된 후 재직 중에 해당업체로부터 세 차례 연구용역으로 1억8천만원 수주

- 이 외에 해당회사, 계열사 등 ‘사내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퇴직 2~3년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

👉 사외이사 결격사유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 :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 해당회사, 계열사 출신인사는 퇴직 경과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지배주주 등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 ‘거수기’ 역할 불가피

<주요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임원출신 사외이사 현황('16.6월 기준, ERRI 경제개혁리포트)>

소 속	성 명	최초선임일	총 재직기간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손해보험	송○수 최○식 이○학	2013.06.21 2016.03.17 2015.03.20	▶ 한화증권 이사(2003)/한화이글스 이사(2007) ▶ 한화에너지 상무 ▶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1999)/한화타임월드 감사(2010)
교보생명	이○효 황○식	2016.03.25 2016.03.25	▶ 교보생명 부회장(1997)/교보교육재단 이사장(2015) ▶ 교보생명 부사장(2007)/고보문고 부사장(2008)
삼성생명 삼성증권	김○영 김○수	2015.03.13. 2014.03.14	▶ 성균관대 교수(현직)/성균관대 총장(2014) ▶ 성균관대 교수(현직)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천○석 이○래	2015.03.26 2015.10.26	▶ 하나증권 사장(2005) ▶ 하나캐피탈 부사장(2011)

나. 사외이사후보 추천방식 및 연임규정 미비로 사외이사 독립성 결여

-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시 CEO 등이 경영진이 참여하고 있어 사외이사 선정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규정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 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 및 제17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사례1) 삼성물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중(위원장, 사외이사), 이○수(사외이사), 윤○현(사외이사), 김○(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 사장)
- (사례2) 하나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윤○남(위원장, 사외이사), 박○규(사외이사), 송○진(사외이사), 김○태(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사례3)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유○렬(위원장, 사외이사), 최○휘(사외이사), 이○남(사외이사), 윤○구(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의견수렴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후퇴하는 등 독립성 확보장치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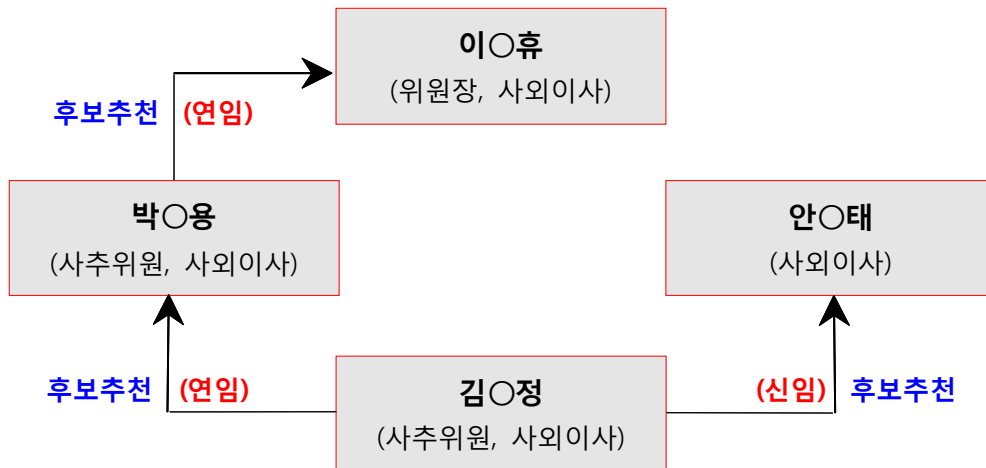
☞ 추진경과 : 「금융사지배구조법」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12.6월) → 정무위 대안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15.4월) →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15.7월) → 하위 법령 추진 및 관계부처 심사·국무회의 통과('16.7월) → 시행('16.8월)

- ※ 2011.12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CEO 등 사내이사 참여 금지’방안이 포함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무산

2012.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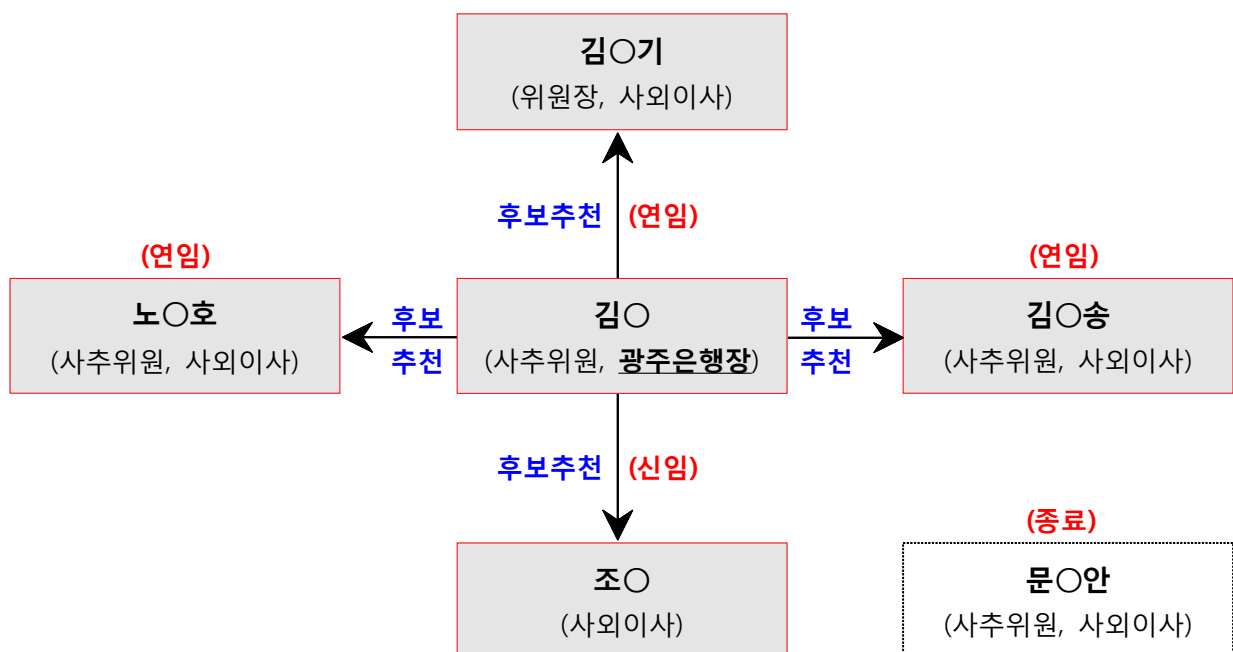
- 또한 기존 사외이사들의 연임추천과 관련하여 ‘서로 추천’하거나 사내이사(CEO)가 기존 사외이사 연임 결정을 좌우하는 실정

※ (사례1) 동부화재의 경우 사추위 위원 전원(3인)이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위원들이 서로 후보추천을 통해 연임하여 자기집단화 또는 자기권력화 우려



<동부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약칭, 사추위) 후보추천 사례(2015)>

※ (사례2) 광주은행의 경우 사추위 위원인 사내이사(CEO)가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사외이사들의 연임에 개입할 수 있어 기존 경영진의 장기 집권 우려



<광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약칭, 사추위) 후보추천 사례(2015)>

- 또한 관계법령에 사외이사의 임기만 규정되어 있고 특별히 연임규정은 불명확하여 ‘장기연임’이 일반화

☞ 사외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 규정

- 「상법」 제383조 제2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3년)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7호 :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합산 8년)

-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전에는 사외이사 임기가 5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제정 후 8년까지 가능함에 따라 제도의 후퇴 논란을 초래

※ '14년 당시 금융위에서 사외이사의 임기 2년(은행)을 1년으로 줄여 매년 재선임과 평가를 받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편(안)'을 계획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에 밀려 최종적으로 2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 「금융사지배구조법('16.8월 시행)」 제정 전까지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범규준」이 적용되던 당시에도 우리기술투자 사외이사(윤○철)과 KTB투자증권 사외이사(김○호)는 9.5년 동안 재임하여 규정 위반

<2014년 당시 사외이사 선임·연임 관련 금융위 추진내용('14년 언론보도자료)>

구분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문제	개편 추진내용
선임	▶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선임	▶ 현행 2년 임기를 1년으로 단축
연임	▶ 견제 없는 장기연임	▶ 주총시 개별이사별로 선임안건 올려 찬반 묻도록 변경

<참 고>

-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범규준(2014.12월)」 제19조 ①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
- ④ 사외이사는 동일 금융회사에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
- ⑤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 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금융회사 장기연임 사외이사 현황('16.6월 기준, ERII 경제개혁리포트)>

소 속	성 명	재직 경력	총 재직기간
하나은행	김○성	▶ 1998.11.27~2006.03.28 ▶ 2012.03.13~현재(2016.03.24 연임) <하나금융지주> ▶ 2005.12.01~2008.03.11	▶ 해당회사 4,247일(11년 이상) ▶ 계열합산 4,290일(13년 이상)
동부생명	양○길	▶ 2014.08.27~현재(2016.03.18 연임) <동부저축은행> ▶ 2006.09.28~2014.09.28 <동부증권> ▶ 2004.05.28~2006.05.26	▶ 해당회사 673일 ▶ 계열합산 4,290일(11년 이상)
교보증권	이○하	▶ 2016.03.18~현재 <교보생명> ▶ 2002.05.07~2011.06.28	▶ 해당회사 104일 ▶ 계열합산 3,443일(9년 이상)

-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에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임기 제한규정 유명무실화

 사외이사의 임기 위반 관련 벌칙 규정

- 「상법」 제383조 제2항 관련 이사의 임기 2년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고,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미확인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융회사는 동일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지 못하도록 제한

- 현대자동차의 경우 '16. 3월 주총에서 남○○을 재선임하여 10년째 사외이사 유지, 현대 글로벌비스는 마○○을 재선임하여 **7년째 연임** 중임
-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16. 3월 주총에서 이○○ 전 신한은행장을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하여 **7년째 연임**
- KCC의 경우 역시 '16. 3월 주총에서 권○○, 송○○을 재선임하여 각각 **8년째 연임** 중인 것으로 확인

다.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평가 관련 책임성 담보장치 미비

○ 부실기업 특혜대출 등을 야기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활동내역 내부평가가 ‘탁월(A등급)’로 평가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

- 사외이사 내부평가 결과를 주총 등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 평가를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 (사례1) NH농협은 '14.12월 기준 자본금 3,224억원, 부채 3,827억원으로 자본 잠식상태에 놓여 있는 ‘리솜리조트’에게 '05년부터 10년 동안 1,649억원 특혜 대출

☞ NH농협 내부평가기준 : 자기평가, 직원평가, 이사회평가, 교육 참여도 등을 설문지 평가와 참석률 평가로 실시

<'14년도 NH농협금융 사외이사 내부평가 결과(기업지배구조 연차보고서)>

평가항목	김○규	손○호	현○택
전문성	탁월(A등급)	탁월(A등급)	탁월(A등급)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기타			

※ (사례2) 최근 5년간('11~'15) KB금융(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8건, 피해액은 4409억원에 달함

☞ KB금융 내부평가기준 : 내부인력에 의한 내부평가, 각 사외이사에 대한 동료평가는 각 사외이사에 대한 서면평가서 작성(정성평가), 출석률은 참고

<'15년도 KB금융 사외이사 내부평가 결과(기업지배구조 연차보고서)>

평가항목	최○휘	유○렬	이○남	박○하	김○희	한○수
전문성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기타						

- 또한 사외이사의 외부평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으로 모범규준이 폐지되기 이전에도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사외이사 외부평가 미운영

☞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범규준(’14.12월)」에 권고사항으로 있던 ‘사외이사 외부평가 실시’ 항목이 「금융사지배구조법(’16.8월)」 제정과정에서 제외

- ※ (사례1) KB금융지주(’16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바. 사외이사 평가 중 (라) 외부평가 : “외부평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범규준 폐지에 따라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사례2) NH농협금융(’15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바. 사외이사 평가 중 (3) 외부평가 : “해당사항 없음”
- ※ (사례3) 푸르덴셜생명보험(’17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바. 사외이사 평가 중 3) 외부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평가와 관련하여서 외부평가기관의 자문 또는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업계가 성숙하는 시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기관 평가자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 고>

-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범규준(2014.12월)」 제24조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경영진에 우호적인 사외이사는 내부평가만으로 연임이 가능하여 경영진과 유착하거나 ‘거수기’ 역할이 불가피

-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총 774억원을 출연한 53개 기업 중 10억원 이상 출연한 기업이 23개이고, 이 중 이사회 등 사내 공식의결기구를 통해 출연절차를 밟은 기업은 2개 기업(포스코, KT)에 불과

- 포스코의 경우 미르재단 출연금은 2015.11.6.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2016.1.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공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미르재단의 경우 재정 및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17.10월 언론보도)

- * 포스코 의결규정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부·찬조는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10억원 초과 기부·찬조는 이사회 전에 재정 및 운영위원회(총5인,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에서 사전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

【개선방안】

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 상장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결격사유 범위**’를 해당 상장회사와의 모든 자문 및 송무계약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

☞ (현재) 사외이사 결격사유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개정

☞ (예시) 사외이사 결격사유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 해당 상장회사와 **모든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금융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결격사유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와의 모든 자문 및 송무계약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

☞ (현재) 사외이사 결격사유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5호 가목 :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서 ~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나목 :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5호 가목, 나목 개정

☞ (예시) 사외이사 결격사유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5호 가목 :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서 ~ 또는 **모든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나목 :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모든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현재 「변호사법」에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 ‘**법조인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임제한 규정 신설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개정

☞ (예시)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 3. 생략
 4.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 해당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 그 계열회사 송무사건(신설)**

○ 기업 등에서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대학교수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겸직기간 포함 전·후 2년 이내 연구용역 수탁 금지** 규정 의무화

- 모든 대학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겸직허가 취소**’ 근거규정 신설

※ 겸직기간 전 연구용역 수탁시 사외이사 임용금지(결격사유 적용)

⇒ **전국의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지침」 제정**

☞ **(현재)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 제3조(허가기준) 5. 사외이사 등 겸직교원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시)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 제3조(허가기준) 5. 사외이사 등 겸직교원은 ~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겸직기간 포함 전·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외이사 등 겸직허가 취소) ①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이 허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 겸직허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고, 총장은 ~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2.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제3조 제5호에 따른 겸직기간 포함 전·후 2년 이내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 수탁사실이 확인될 때(신설)**
 4.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해당회사, 그 계열회사 등에 근무하였던 ‘**사내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퇴직 후 2~3년 이내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 및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개정

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CEO 등 경영진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

-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등의 참여도 금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 제3항 개정

☞ (예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생략
-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위원 구성시 경영진의 참여를 제외한다.(개정)**
- ④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기집단화 방지를 위해 사외이사간 상호추천 금지 규정 신설

- 사외이사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연임 규정 명확화

- 「상법」에 연임 근거규정 신설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이전 수준으로 강화(최대 8년→ 5년)

- 상장회사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 규정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확인시 처벌규정 신설

⇒ 「상법」 및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다. 사외이사의 책임성 담보장치 강구

- 금융회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전과 동일하게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주총, 금감원)에 보고 의무화

※ (예시) 평가결과 2회 연속 부정평가시 사외이사 해임 근거규정 마련

- 상장회사도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를 주총에 보고 의무화

※ (예시) 평가결과 2회 연속 부정평가시 사외이사 해임 근거규정 마련

<참 고>

-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범규준(2014.12월)」 제24조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범규준(‘14.12월)」은 「금융사지배구조법(‘16.8월)」 제정으로 폐지

- 연임(2년 이상) 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내부평가 외 추가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의무화

※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기관은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와 최근 5년 이내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

☞ (참고) 외부평가 의뢰기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금융연구원, 서스틴베스트 (의결권 자문사) 등

- 연임 사외이사의 외부평가 실시 결과에 대해서도 주총 또는 금감원 보고 의무화

⇒ 「상법」 및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문제점】

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 미흡

- 2000년 10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 설치가 의무화되어 17년째 운영 중이나 금융사고 지속적 발생

<(참고) 금융사고>

-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거래자 등에게 손실초래 또는 금융질서 문란하게 한 경우(횡령, 유용, 배임, 사기 등)

※ 지난 5년간('11~'15) 17개 시중은행에서 27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사고금액만 8,564억원에 달함('16년 금융감독원 국감자료)

※ 지난 8년간('10~'17.6월) 금감원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중 695건(23.9%)가 주요 금융그룹 및 재벌그룹 소속 금융회사에서 발생('17.7월 언론보도)

<주요 금융그룹 및 재벌그룹 소속 금융회사 제재 현황('16.6월 기준)>

No.	그룹명	제재건수	비 고
1	신한	99	
2	NH	94	
3	삼성	86	
4	KB	85	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	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	
7	한화	61	
8	미래에셋	48	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	
10	흥국(태광)	38	
계		695건	

- 특히, 증권사 등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낮은 수준 제재조치로 인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 유착의혹 소지 발생

※ 지난 5년간('11~'15) 총 1,052건의 제재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경고 42%, 고발은 9.4%에 불과

※ 최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로 증권사의 금감원출신 상근감사 임기가 장기화 되는 현상 발생('16년 기준 : 미래에셋증권 감사 8년, 한국투자증권 감사 7년, 유진투자증권 감사 7년, 키움증권 감사 11년, 현대증권 감사 10년)

나.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법적지위 관련규정 위반사례 빈발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되나 경영진 직속 또는 본부장 예하에 설치되어 경영진이나 본부장의 내부통제 위반 여부 조사가 곤란

☞ 은행의 직급체계 : 은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본부장(상무)**→부장 순

<2014년 당시 주요 금융권 준법감시인 직위 현황>

은행	성명	직위	은행	성명	직위
신한	허○석	본부장	하나	박○열	본부장
국민	신○영	상무	기업	전○옥	본부장
우리	정○문	상무	농협	정○석	부장

- 금융사고가 잦은 저축은행 등은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준법감시인 확보에 어려움 발생

※ 과태료 및 과징금 규모가 큰 대형 금융사고 20건 중 12건(60%)이 저축은행 및 중소 금융회사에서 발생

<저축은행 및 중소 금융회사 사고유형>

- 대주주 등 금융회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 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제공
- 금융회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하고 손실위험이 큰 후순위 채권을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

【개선방안】

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여방안 마련

<참 고>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준법감시인의 자격 대상범위 확대

- 저축은행 및 중소 금융회사의 형편을 고려하여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대상 인력풀을 준법지원인 수준으로 확대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대상범위 및 자격요건 비교>

구 분	준법지원인 (상법)	준법감시인 (금융사지배구조법)
대 상	상장회사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사 등
업 무	준법통제 준수여부 및 위법행위 조사	준법통제 준수여부 및 위법행위 조사
보 고	이사회	감사위원회(감사)
임 면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자 격	■ 변호사 ■ 법학전공 조교수 5년 이상 경력자 ■ 그 밖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자 ■ 금융관련분야 석사이상으로 연구원, 조교수 5년 이상 경력자 ■ 변호사, 회계사 5년 이상 경력자 ■ 기재부, 금융위, 증선위, 감사원, 금감원, 한국은행, 예보 등 7년 이상 경력자 중 퇴직 후 5년 경과자

붙임1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제도 연혁

연월	관련규정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상장회사	금융회사	
1997.1	은행법		상임이사수 1/2이하 (비상임이사는 주주, 이사회 추천)	
1998.2	유가증권 상장규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이사총수의 1/4, 최소 1인 이상)	(상장회사와 동일)	
1999.9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대규모공개기업(자산 1조 이상)은 이사 총수의 1/2 이상(최소 3인) 사외이사 선임 권고 주권상장기업은 이사 총수의 1/4 이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사외이사가 과반수 포함된 이사추천위 설치 권고 사외이사는 취업승낙 시 기업, 경영진 등과 관계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업은 이를 공개	(대규모공개기업과 동일) (상장회사와 동일) (상장회사와 동일)	
2000.1	은행법, 증권거래법		사외이사제 의무화 (이사수 1/2 이상, 최소 3인 이상)	준법감시인 1인 이상 의무화
2000.10	금융지주회사법		1천억원 이상 일정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	
2001.3	증권거래법	대규모기업(자산2조 이상)은 이사총수의 1/2이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대규모 기업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설치 의무화 코스닥 상장법인도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벤처기업 제외)	증권회사는 대규모기업과 동일 증권회사는 대규모기업과 동일	

연월	관련규정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상장회사	금융회사	
2001.3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 법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 사도 사외이사제 의무화 (이사수 1/2 이상)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 사도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 구성 의무화(사외이사 1/2 이상)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 사도 준법감시인 1인 이 상 의무화
2002.4	은행법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설치 의무화(사외이사 1/2 이 상)	이사회 결의로 준법감시 인 임면 전문지식, 경험 등 준법감 시인 선임요건 부여
2003.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사외이사수 확대 (대규모공개기업의 경우 과반수 이상, 최소 3인 이상 / 기타 최소 2인 이상) 사외이사 취임시 특수관계 확인서 제출 및 공개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 공시 대상 확대(출석률, 안건별 찬반의견 등)	(대규모공개기업과 동일) (상장회사와 동일) (상장회사와 동일)	
2003.1 2	증권거래법	자산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 인은 이사 총수의 1/2이 상(최소3인) 사외이사 선 임		
2009.2	상법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벤처기업 중 자산 1천억원 이하 등 제외) 대규모상장회사(자산 2조 원 이상)는 과반수 이상, 최소 3인 이상 선임 의무 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사외이사 선임 제한		

연월	관련규정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상장회사	금융회사	
2009.7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 1인 이상 선임 의무화
2010.5	은행법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 규정 및 공시 의무화	
2014.12	금융사지배구조 법 모범규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 성 의무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는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2회 이사회 보고 사외이사의 이사회가 정 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제한(2년 이내)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 공시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제한(은행지주회사 및 은 행은 2년 이내)하고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제 한(총 5년 초과 금지)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규정(매년 사외이사 총수 의 1/5 내외) 매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2년 이상 재임시 최 소 2년에 1번 외부 평가 권고)	
2015.9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이사회 결의로 준법감시 인 임면, 해임시에는 이사 총수의 2/3 이상 찬성으 로 의결 그 외 준법감시인 자격, 임기 및 지위, 권한과 의 무 등 규정

연월	관련규정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상장회사	금융회사	
2016.7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장회사 사외이사 규모를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개정 사외이사가 과반수 포함된 이사추천위 설치 권고 사외이사는 거래기업이나 동종업계 사외이사직 등 겸직 금지	(상장회사와 동일) (상장회사와 동일)	
2016.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행, 금융지주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 3인 이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자산 3천억원 이상 보험회사 등은 1/4 이상 선임) 임원추천위를 3명 이상,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사외이사 결격사유 확대 (최근 3년 이내 금융회사 상근 임직원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 규정 및 공시 의무화	이사회 결의로 준법감시인 임면, 해임시에는 이사 총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그 외 준법감시인 자격, 임기 및 지위, 겸직금지, 권한과 의무 등 규정

【회사 :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및 자체 역량 강화】

- ①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②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 ③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강화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회사가 법정기한(주총 6주전) 내 감사인·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신설
- ④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점검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
 -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 실태를 직접 주총에 보고토록 의무화
- ⑤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 시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 선임, 조사 후 경영진에 시정 요구(대표이사는 조사비용 부담, 자료협조)
- ⑥ 대형 비상장사 및 금융회사의 회계규율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
 - * 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 등

【감사인 :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품질 제고】

⑦ 감사인 지정제를 감독 보완수단으로 적극 활용

- 「주기적 지정제」 도입 :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

- 단, 최근 6년 기간 중 금감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등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상장예정, 감리 후 조치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되는 기존 「직권지정제」의 대상도 확대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주주 요청, 표준감사시간 미달 등을 지정사유에 추가

⑧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非감사용역 제한 강화 (공인회계사법)

- 금지대상 非감사용역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투자중개 등)
- 감사대상회사의 종속회사의 非감사용역도 제한

⑨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상장회사 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 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

⑩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책임 강화

- 감사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명시
- 증선위는 품질관리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공개

11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 확보 유도

* 표준감사시간 미달 회사 및 회계법인에는 지정제 적용 등 불이익 부과

12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 (현행)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개선) 45일 이내

* 단,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선임

【정부 : 회계부정·감사부실에 대한 감독역량 및 제재수준 강화】

13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회 사	회사 관계자	감사인
분식액 20% 이내	회사 과징금 10% 이내	감사보수 5배 이내

14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15 회계부정 관련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징역 (5~7년 → 10년 이하) 및 벌금 (5~7천만원 → 부당이득의 1~3배 이하) 상향 조정, 회계법인 손해배상 시효 연장 (3→8년) 등

16 회계법인에 대한 상시감독 강화

○ 상장사 감사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 경영, 재산,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선위에 즉시 보고

17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형벌·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토론문 1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토 론 문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공청회 2017.11.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경제개혁연구소(연대) 소장
김 우 찬

1. 총 평

-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 사안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하지만 이러한 업무가 과연 법이 부여한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그러나 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와 제12조(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기능) 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2.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을 “모든” 법률자문·경영자문으로 변경하는 「상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함
 - 하지만 해당회사가 아니라 계열회사 또는 총수일가를 위해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이해충돌은 해결하지 못함
- 또, 해당회사뿐만 아니라 그 계열회사의 송무 사건을 맡는 경우에도 수임을 제한하는 「법호사법」 개정안에 찬성함
 - 하지만 해당회사 및 계열회사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송무 사건을 맡아 초래되는 이해충돌은 해결하지 못함
- 또, 퇴직 후 냉각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
- 한편, 각 대학의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지침」을 제정 또는 강화하여 연구용역 수탁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
 - 하지만 연구용역만이 이해상충 사유가 아니며, 이 밖에 교육프로그램 수주와 기부금 수령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3.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경우에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를 배제시키고, 비금융회사의 경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사내이사를 배제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오히려 사외이사의 자기집단화 우려가 없는 재벌회사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사내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시킬 필요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 선임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 이런 의미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임을 법으로 의무화시킬 필요
-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시키지 않고, 1인 이상만 분리 선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임이 동시에 의무화 되더라도 평상시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하고, 주주가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만 집중투표제를 실시

4. 사외이사의 책임성 담보장치 강구

- 외부기관에 의한 사외이사 평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됨
 - 이들 외부기관이 해당회사로부터 평가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음
-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시켜 충실의무를 위반 사외이사가 금전적인 손실을 보도록 하는 것이 책임성을 담보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음
 -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방법으로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요건을 완화할 필요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시 상장회사는 0.01%, 금융회사는 0.005%)
 - 이를 위해 금액 기준을 추가할 필요 (즉, 소 제기 당시의 보유주식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원고의 자격 갖춘 것으로 봄)
 - 상법 제400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5.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법에서 정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상장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관리종목으로 지정 (제47조)
-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는 방법 있음
- 한편,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 (또는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준법감시 기능을 제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함
- 「상법」 제408조의8은 집행임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토론문 2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단상(斷想)*

성승제

차 례

I. 에필로그

1. 배경
2. 일본Zaibatsu 미국조사단의 시각과 현재 한국 재벌
3. Chaebol 비교대상? ; 『Not ‘현재 선진국’ But ‘선진국의 과거 또는, 남미’』
4. 이 글 ‘기업지배구조’? --> 산업과 소유집중·경제력집중 등 거시적 의미

II. 상법연혁 및 기업지배구조: 상법만으로 해결 불가능

1. 기업지배구조 개념 등장
2. 20대 국회 상법개정안들
3. 거시적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중 회사편과 기타 법령

III.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 시장의 실종과 법의 장식화/파편화

1. 기업지배구조 개선: 백약이 무효
2. 정직한 용어사용: 재벌 또는 재벌총수
3. Zaibatsu 해체와 은닉된 사실: 일반집중·시장집중·경제력집중 외, 소유집중 해소

III. 에필로그 : 분석과 전망 - 시장의 회복이 필요하다.

1. 한국연기금자본주의의 장래
2.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사외이사는 거수기
3. 미국과 달리, 사외이사와 기업 **monitoring**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유럽에서 나온 제도들 (한국은? 현실적으로 이것이나마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 사례1 : 기업의 사회적책임
 - 사례2 : 스튜어드십코드
 - 사례3 : 노동이사제
4.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및 다중대표소송
5. 시장기능의 회복

* 이 글은 경제법학회 춘계학술대회(대주제: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본 상법과 공정거래법』, 2017.3.17.)에 필자가 발표자로서 발표한 2주제(“Corporate Governance에서의 민주주의와 정의”)로 발표한 후, 『경제법연구』(16권 1호, 2017.4.30.) 게재한 것을 수정/첨언함.

I. 프롤로그

1. 배경

이 글은 한국경제가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보려고 노력하였다.¹⁾ 이 글의 기초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법제도를 모색하려는 것으로서, 일응 보수주의적 입장에 서있는 셈이다.²⁾ 이 글은 많지 않은 수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원칙을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시장경제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할 것이다.

사실 많은 법제도 창설에 있어서 기교적인 법 조항들을 자꾸 삽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런 것을 ‘규제’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규제에 대해서 소위 풍선효과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져 있다. ‘풍선효과’는 불필요한 규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단어이다. 그 의미는 법이 규제를 새로이 설치하면 탈법행위를 부를 가능성만 높일 뿐이라는 것이다. 탈법행위를 막아보려고 다른 규제를 동원한다면 더 다양한 탈법행위를 탄생시킨다. 법제도 체계를 어지럽힐 뿐이다.³⁾ 규제보다는 시장에 의한 규율을 요한다. 한국은 소위 IMF 위기이후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주요한 화두로 삼은지 20여년이지만 별달리 개선된 것이 없다. 현실은 각주1의 문헌들이 조사한 것처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왜곡되어 있다.

1) 이 글은 한국경제가 자유시장경제적 기초에 따른 자율적 기능이 쇠퇴하였다는 점을 전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한 시장구조조사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한국은 1980년대 후반까지 시장집중도가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악화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잠시 완화되었던 추세도 있었다. 일반집중(overall concentration)율, 산업집중(industrial concentration)율, 독과점구조고착산업비율 모두 비슷한 경향을 갖는다(이상은 성승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12, 52~60쪽 참조 ; 한편 여기서 인용한 문헌들은,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2011.3), KDI의 각각 1999년, 2001년, 2003년, 2010년 그리고 2011년의 『시장구조조사』, 시장경제연구원의 2006년 및 2008년 『시장구조조사』 등.) **각주 23도 비슷한 내용임.**

2) 신문기사를 인용한다.

“...상략... 2000년대 후반 영국 대사관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런던을 방문했다. ...중략... 영국 보수당의 하원의장이던 존 헤이즈(John Hayes)가 이들을 맞았다. ... 중략... 통역하면서 상대방에게 앞잡아 보일 노골적 표현은 걸렸는데, 헤이즈가 결국 ‘겉이 다르다’는 눈치를 챘는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보수는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더 베푸려는 진실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노여움을 살 테니까요.” 화끈거리는 얼굴로 통역했더니, 한국 의원들의 표정이 벌레 썩은 듯 구겨졌다...하략... <http://www.hankookilbo.com/v/05689709c2534d3493a44a7cb309575e> (최종 2016.7.7.)

3)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금융 분야이다. 중소기업은 재벌의 독과점이윤 획득을 축소시키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킬 때 살아날 수 있다. **OECD 국가 중 창업 3년후 생존율이 가장 바닥**, 일 뿐 아니라 큰 차이로 가장 낮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재벌대기업들은 그들이 형성한 독과점질서로 (시장이 작동한다면 불가능했을)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모든 산업시장도 지배하고 하청기업 이윤도 불허한다. 국내시장은 협착하고 비정규직 현상 팽배 등으로 중소기업 임금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그리고 외국보다 적게 하도록 자연적인 압력을 준다. 이는 국내소비시장을 협소하게 하며, 스스로의 시장을 줄어붙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수출재벌대기업들의 시각으로써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정책을 재단하는 탓에 중소기업이 자생할 환경을 박탈 하고 있다.

예컨대 고환율(低원화가치) 정책은 수출재벌대기업에게 유리하고 반면 수입품을 제조/가공/재포장 등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정책이다. 이를 2007년부터 최근까지 기간과 반면 2000년대 초·중반 시기를 대조해본다면 경제력집중의 악화나 중소기업의 몰락의 측면에서 연결된다.(성승제,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12집 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12, 5쪽 이하 참조.

정부는 중소기업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는 거의 재정낭비로 귀결되고, 정부 돈은 눈먼 돈으로 지칭될 뿐이다. 효과는 별로 없고 막대한 재정은 사라진다. 중소기업이 자생할 토양을 만들어주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시스템에만 투입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필자의 생각인데, 한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비효율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서, 장우혁(한국개발연구원)의 각종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그 연구물들은 실증분석을 중점제시한다. 필자 판단으로는 근본적 이유는 한국경제가 정상적인 기업/자본 시장을 조성하는 것에 실패한 때문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이 생존할 시장을 형성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장식품처럼 존 재하는 시장을 유지할 재정을 투입하였다. 어쩌면 중소기업청은 사라져야 할 행정청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생존하려면 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자본시장과 기업시장이 정상작동되도록, 기본 법제도가 원칙대로 정비되어야 한다.

독과점 기업집단들은 지대추구(rent seeking)에 전념하고 초과이윤을 획득하여 한국의 시장구조에서 ‘자유’와 ‘시장’을 배제하는데 성공하였다. 나아가 성공의 폭을 더 키우고 있다.⁴⁾ 이것이 지속된다면 재벌 또는 대기업집단은, 그들이 축소시킨 국내시장 때문⁵⁾에 자신들도 성장동력 획득은 물론이고 현상 유지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요컨대 산업별 또는 국가별 기업지배구조 재정립은 진정으로 모두가 회복할 유일한 방안이다. ‘재벌’을 직접 지칭하거나,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도외시되는 핵심문제인 ‘소유집중’ 문제를 거론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완곡한 어법은 실상을 왜곡한다. 시장 작동과 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원칙확립과 그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방해한다. 반면 독과점적 이윤과 지대추구(rent seeking)를 가속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자행하는 재벌의 방어능력은 높인다.

일반집중/시장집중/산업집중 모두 지표는 악화하고 있는데도, 재벌비판에 전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와 달리, 오늘날 경제민주화라는 일종의 완곡어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일본 Zaibatsu 미국조사단의 시각과 현재 한국 재벌

1946년 1월 일본재벌해체 직전 방일한, 아래와 같이 미국의 재벌조사단 Edward 이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지적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빗대어도 부합하는 것이 적지 않다.

재벌해체 목적은 일본 사회조직을 미국경제가 바라는 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며, 일본 국민의 (직접적: 필자 추가)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 목적은 일본 군사력을 심리적·제도적으로 파괴하려는 것이다. 재벌은 과거 전쟁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서 이를 해체하여 산업지배력을 분산하는 것은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중략... 일본의 대외침략에 대한 재벌의 책임은 人的인 것 보다는 制度的이다. 즉 개개 재벌 조직이 군사적 침략에 이용될 수단이 되었다. 일본 산업은 일본정부가 지지하고 강화된 소수 대재벌 지배하에 있었다. **산업지배력 집중**은 노사간 半봉건적 관계를 존속시키고 **노동임금을 열악한 수준으로 내리고 노동조합 발전을 방해**하였다. 독립 기업자의 **창업을 방해**하고 일본에서 **중산계층 형성을 방해**하였다. 중산층이 없어서 일본은 당시까지 개인이 독립할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군벌에 대항할 노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결과 다른 나라에서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항할 반대세력으로 작용할 민주적·인도적 국민감정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특권적 **재벌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으로써 일본을 제국주의적 전쟁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중략... 재벌이 일본국가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이익에 충실하게 활동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벌의 특권형태를 파괴하고 다른 민주주의 여러나라와 같이 군국주의자에 의한 정부지배에 대항할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의 對日 재벌정책의 중심목적이다⁶⁾

4) 그러나 사냥실력이 뛰어난 여우는 (먹이감인 토끼가 다 사냥되어서) 굶어죽는다.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겠는가.

5) 각주3 첫 번째 문단 참조.

6) GHQ(General Headquarters, 정식명칭 연합군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는 前後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였다.

1945년 9월 22일 미국정부로부터 ‘항복후에 있어서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본 문서의 목적’ 부분을

다만 chaebol이란 일본의 zaibatsu(財閥) 표기의 한자어를 한국어로 읽은 말⁷⁾로서, 한국 재벌 chaebol의 어의와 일본의 財閥zaibatsu는 여러 모로 같지 않다. 일본에서 戰前의 zaibatsu는 가족 또는 가문이 기업 집단의 지배권을 공유한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일본은 재벌해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중소기업 기업군들의 경우 아직도 창업주의 자손 상당수가 경영/소유/지배에 참가하는 ‘가족적 회사’가 적지 않다.

반면 한국은 소위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는, 가족이나 가문이 아닌 (창업주로 부터 지배권을 이전받은)개인인 경우가 많다.

규제론을 재언한다면, 회사법 분야에 대한 규제는 옳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 의한 규율이 바람직하다. 규제 또는 그에 따른 행정절차나 수사는, 한정된 공적 집행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재벌 오우너들로 하여금 법의 맹점을 찾아 스스로 유착의 길을 찾게끔 한다. 공권력에 의존하여야 하는 법적규제 장치는, 위법한 기업인의 행동이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하고 싶지 않게 한다. 극히 일부만 발견되거나, 여론의 주목을 받거나, 권력자의 시각에 필요한 것만 발견될 수 있다.

미리 이 글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1) 회사법 두가지(큰 항목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큰 어젠다만을 던지도록 할 것이다. ① 하나는 사외 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큰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고, ② 또 다른 하나는 원론적인 대표소송 제도정착(단독 주주권화와 다중대표소송 허용)에 대한 것이다.

(2) 그리고 ③ 국가적 연금운용 구조적 문제에 어젠다를 제시하려 한다.

위 ①과 ③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얹혀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필자는 ③을 개선하는 방법을 실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①이 성취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하에서 노력하겠다.

3. Chaebol 비교대상? : 『Not ‘현재 선진국’ But ‘선진국의 과거 또는 남미’』

한국의 Chaebol은, 1900년 전후의 미국과, 전후 일본의 Zaibatsu와 현재의 남미와 비교하여야 한다. 한국의 Chaebol이, 현재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업지배구조 내지 전반적 상태가 논의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거나 무지의 소산이다.

제외하고 4개 장, 1장 궁극적 목적, 2장 연합국의 권력, 3장 정치, 4장 거제로 구성되었다. 4장 경제 B항에 ‘일본의 상업 및 생산의 대부분을 지배해 온 산업상 및 금융상의 대Combination의 해체를 촉진’한다고 규정하였다. 1946년 1월 일본 재벌조사단 단장(Edward)은 **재벌해체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한다.

라고 하였다. Thomas Arthur Bisson, *Zaibatsu Dissolution in Japan*, of California Press 1954, pp.156 ; 권오승, “일본의 재벌해체와 그것이 한국 재벌정책에 주는 교훈”, 서울대학교 『법학』(제41권 제4호), 2001, 195쪽 이하에서 재인용.

GHQ는 일본 산업계에서 군국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일본을 정치경제적으로 민주국가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재벌(또는 지주회사) 해체작업은 5회에 걸쳐 지정된 지주회사 83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 1군 28개사, 2군 51개사, 3군 2개사, 4군 2개사로 구분되었다. 1군은 해체. 2군 사업경영지주회사는 보유 유가증권을 소위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양도한 후 사업부문은 영위, 3군 미쓰이(三井)물산과 미쓰비시(三菱)상사는 경제력집중 분산정책에 따라 각각 220개·130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4군 국제전기통신과 일본전신전화공사는 국가관리로 이양될 목적으로 해체·정리되었다. 그 밖에 GHQ는 재벌해체와 병행하여 산업을 경쟁적 구도로 전환하고자 직접 거대기업들을 해체조치(그 일환으로 1947.12.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 제정) 後 日本제철, 王子제지, 三稜중공업, 帝國섬유 등 11개사가 동 법령 적용되는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Ibid pp.97-121 ; 위 권오승, “일본의 재벌해체와 그것이 한국 재벌정책에 주는 교훈”, 서울대학교 『법학』, 201쪽 이하에서 재인용)

7) 한국은 閥族·閥閥, 家閥, 門閥 등 어휘는 사용하였지만 財閥이란 어휘는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 양국에서 사용되는 ‘財閥’은 같은 한자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의미도 같지 않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zaibatsu 개념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변천되어 왔다. ‘재벌’이란 부호의 가족·동족의 봉쇄적인 소유·지배하에 성립된 다각적 사업경영체’라는 정의가 사용되기도 한다. 성승제 외 1인,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10, 84쪽 이하 참조.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등 산업화 과정을 이행할 때에 많은 회사들이 명멸한다. 어느 나라든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시장의 성장과 부작용 등의 양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불황과 호황이 교차한다. 때 불황기마다 도태된 기업들이 나타나며 생존한 기업들은 다시 찾아 온 호황기에 더 큰 성장을 한다. 초기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산업자본주의 단계를 지나가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한다.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라 불리고 경제적으로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불리는 이 때는 각 산업마다 거대한 소수기업이 해당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단계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거쳤다.

주요 선진국들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선진국이 되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남미를 예시할 수 있다. 문제점 해소라 함은, 특정 자연인 또는 해당 자연인을 위시한 몇몇 가족에게 국가 경제력 상당부분이 집중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를 해소하고 국부 상당부분이 국민 다수의 간접소유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경제민주화라고 칭해 본 적이 있다.⁸⁾ 이 과정에 성공하여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가령 남미 여러 나라들을 예로 들 수 있다.⁹⁾

전술처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및 그에 이미 선행하는 전쟁과 침략행위를 도발한 힘의 원천은, 일본 재벌조사단장 Edward가 1946년 1월 발언하였듯이, 재벌의 소유 집중에 뿌리를 둔 것이다.¹⁰⁾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국가는 주위 국가들이 그 위험성을 경계하여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또 다른 나라, 독일의 경제 불균형도 심각하였다. 독일은 1차세계대전후 역사에 길이 남을 초인플레이션 시기(1921 ~ 1923)를 거쳤다.¹¹⁾

미국의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참상에 대해서는 Veblen¹²⁾의 증언이 남겨져 있지만, 미국은 잘 알려진 셔먼법 제정과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해체 과정을 겪었고, 덕분에 미국은 과국으로 치닫는 대신 패권의 양수인이 되는 과정을 부드럽게 겪을 수 있었다.

8) 성승제, “재벌 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사법연구』 (25권 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 191쪽 이하.

9) 이상 두 개 문단은, 성승제 외 1인,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79-80쪽.

10) “**특권적 재벌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으로써 일본을 제국주의적 전쟁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11) 찰스 페인스틴/피터 테민/지아니 토니올로 저/양동휴 외 2인 역,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 동서문화사, 2008.11, 72-73쪽. 이 시기의 초인플레이션의 배상금 요구였다는 일반적 인식은 오류였다는 점을 통화주의(이 책에서는 ‘화폐수량설’이라 표현)가 잘 설명하고 있다(실제로 별로 배상금을 갖지도 않았다).

이를 잘 간파한 사람은 브레시아니 투로니 라는 이탈리아 학자이다. 그가 저술한 The Economics of Inflation(1937)은 안타깝게도 아직 번역되지 아니하였다.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독립성이 확립되지 못한 독일 중앙은행이 통화를 무제한 발권한 것이 그 참극의 정확한 원인이다. 자세한 독일의 당시 참상에 대해서는, 『권력과 인플레이』(맥스 샤피로 저, 등지, 1982) 참조.(최근에 다소 선정적인 제목(『인플레이로 돈 버는 사람들』)으로 재출간되어 있다). 당시 독일 GDP의 4분의1이 한 사람 **Hugo Stinnes**에게 귀속되었다. 그는 독일 신문의 40%를 장악(같은 책 248쪽)하였고, 그를 위하여, 독일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여전히 통화를 더 찍으라고 주장(266쪽)해 주었다. 장악된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Hugo Stinnes**의 나팔수가 되었다. 1924년 4월 그가 죽자 거짓 말처럼 초인플레이션은 사라졌고, 그것은 자기들이 (Stinnes에게 재산을 탈취당하여)거지가 될 것을 우려한 독일의 나머지 재벌들(크루프, 티센 등)이 제동(261쪽)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할 뿐이다.

요컨대 경제위기의 본질은 부의 이전을 놓고 벌이는 계층간 투쟁이다(Keynes, J. M., *Essays in persuasion*, London: St. Martin's Press, 1973(1931), 재인용, 성승제, “총부채 관리 재정운용과 법정책”, 『행정법연구』, 한국행정법학회, 2016.9, 42쪽). 독일은 계층간 평형이 무너졌기 때문에(재벌 경제력집중) 악의 구렁텅이에 휩쓸려 들어갔고, 미국이 그들의 재벌을 해체해주어 정상국가가 될 수 있었다.

12) 잘 알려진 쏘어스타인 베블렌의 『유한계급론』.

4. 이 글 ‘기업지배구조’ ==> 산업과 소유집중·경제력집중 등 거시적 의미

‘기업지배구조’는 ‘corporate governance’를 번역한 말로써 회사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구조와 지배력의 구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 ① 본래 기업내부 의사결정의 작동 메커니즘을 의미하여 쓰였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 ② 근래 주주대중화로 개별주주 지분이 소액화하여 회사에 대한 감시기능이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사익추구/활용이 심화되었다.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경영을 감시, 견제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말로 전화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¹³⁾
- ③ 나아가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기업의 번영을 목적으로 한 지배구조의 우량성을 논하기도 한다.¹⁴⁾

이 글은 기업지배구조의 의미를 개별기업의 지배구조와 무관하게 사용한다. 이 글은 ③의 의미에 가깝게, 그리고 더 거시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어떤 나라, 어떤 산업 또는 어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구조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의미로써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시작된 90년대 초반부터이다. 기업지배구조는 실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두는 주제이지만, 법학에서는 주로 ②의 의미 즉 경영감시와 견제를 위한 조직법적 장치를 뜻하는 어휘로 사용된다. 이는 한국 대부분 기업들이 소위 Owner 지배하에 있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맞물린다. 이러한 뜻에서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한국 기업에는 소수지분밖에 없으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전횡하는 대주주들이 많음에도,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반성론이 근거에 있다 또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경영의 감시·견제를 위한 조직법적 장치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구축할 것이냐 하는 명제로 이해된다고 할 것이다.

이 글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종래 기업지배구조론 논의는 무성하게 이루어졌지만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적인 법인이라는, 법상 개별독립체인 개별기업들 내부의 구조만 논의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이거나 방법론적 장치에만 집중하는 논의는 올바른 시각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한 탓이다. 이 글은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보는데 주력하려는 생각을 갖고 씌어졌다.

II. 상법연혁 및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 개념 등장

상법 개정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띄엄띄엄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상법은 거의 연연세세 개정 또는 거의 항상 개정 작업 중이었다.

13)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지배구조’로 검색가능한 가장 오랜 국내문헌이, 유득준, “기업의 자본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1981. 이다. 제목으로 미루어보아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14) 神田秀樹, “獨立役員制度の意義と期待される役割”, 憧憬證券取引所 編, 『獨立役員の意義と役割』(別冊商事法務 第377号), 2013년 5월 5쪽 이하.

- ① 상법전 제정(국회 대신 국가재건최고회의). 1962.1.19. 제정, 1963.1.1. 시행.
- ② 1984.4.10. 개정(법률 제3724호) 주로 **회사편** 대폭개정
- ③ 1991.5.31. 부칙개정(법률 제4372호)
- ④ 1991.12.31. 개정(법률 제4470호) 주로 보험편/해상편 대폭개정
- ⑤ 1995.12.29. 개정(법률 제5053호) 총칙편/어음·수표법 일부/**회사편** 큰 폭 개정
- ⑥ 1998-1999-2001년 **네 차례** (기업의 구조개편과 지배구조 중심) 개정(2001년 두 차례)
- ⑦ 2007.8.3. 개정(법률 제8581호) 해상운송 관련 법체계 개정
- ⑧ 2009.1.30.(법률 제9362호)에는 같은 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상법 이관)을 위한 개정, 그리고 2009.5.28.(법률 제9746호) 설립절차 간소화 내용의 개정 등 **두 차례** 개정.
- ⑨ 2010.5.14. 개정(법률 제10281호) **회사편** 등 대폭개정
- ⑩ 2011.4.14. 개정(법률 제10600호) 모두 **회사편** 중심 개정. 주로 **경영자편의위주** 개정
- ⑪ 2014.5.20. 무기명주식제도 폐지 소폭 개정
- ⑫ 2015.12.1.(법률 제13523호) 기업조직개편 위주 개정

흔히 상법학자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한국 지배구조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강한 불만이 지배구조론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기업실패의 책임을 대주주의 독선적 경영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기면서, 지배구조는 이후 상법개정의 중심화두가 되었다. 1997년 이후 상법이 빈번히 개정되었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한 것이었다.

2. 20대 국회 상법개정안들

현재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발의된 상법개정안들을 정리하였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진행상태	주요내용
①2000106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0인)	06.07	소관위 접 수	- 회사 자기주식 처분시 현행 정관/이사회 결정방식 재고
②2000211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06.14	소관위 접 수	- 한진해운 등 경영실패자, 과도한 보수 규제. 보수위원회 확대
③2000645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김종인의원 등 122인)	07.04	소관위 접 수	- 경제민주화·포용적성장, 다중대표소송 도입, 대표소송제도 강화, 집중투표제 강화, 독립사외이사제도 강화, 감사위원회 위원 독립성강화, 전자투표제 강화 등
④2000837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07.12	소관위 접 수	- 대기업의 분할/분할합병을 통한 자회사활용 농간 등 악용 억제
⑤2001017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07.21	소관위 접 수	- 생보사 자살보험금 불지급 사유로 소멸시효 원용 차단 (중단)

⑥2001210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정태욱의원 등 10인)	07.26	소관위 접 수	- ex.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과다 임원보수 지급한 부분 환수 조항
⑦2001463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20인)	08.08	소관위 접 수	-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위해, 다중대표소송/다중장부 열람권, 감사위소속될 사외이사 선임강화,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투표제/서면투표 강화 등
⑧2002091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09.02	소관위 접 수	- 경영판단원칙 위반 입증책임전환,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6개월보유), 근로자/노조 대표소송 제기권, 다중대표소송 /다중장부열람권, 이사책임제한 조항 삭제, 근로자 사외이사 1인, 감사위원될 사외이사 선임강화, 전자투표/서면투표 강화 등
⑨2002360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09.21	소관위 접 수	- 자살보험금 면책사건 중 음주/무면허운전 면책조항 효력 인
⑩2002408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09.22	소관위 접 수	- 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 거래시, 이해관계자 제외 주총승인
⑪2002951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10.27	소관위 접 수	- 경영권승계 분쟁 최소화, 규정/절차 마련 입법
⑫2003034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10.28	소관위 접 수	- 일정규모 상장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규정 사전마련 등
⑬2003254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11.3.	소관위 접 수	- 대표소송 승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지급 청구가 가능 -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⑭2003516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4인)	11.11	소관위 접 수	-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 -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 3% 이상 지분보유 주주에게 사외 이사 1인 추천&선임보장권
⑮2003580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1인)	11.15	소관위 접 수	-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보완(전자문서)
16.2003598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2인)	11.16	소관위 접 수	- 적대적M&A기법 방어를 위한 경영권방어수단으로 차등의 결권 등 도입
17.2003758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11.21	소관위 접 수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개편 관련 정
18.2003952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11.29	소관위 접 수	- 지주회사 전환시, 자기주식 의결권 부활되면서 대주주 지배력강화에 이용되는 부작용정비
19.2004597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2인)	12.26	소관위 접 수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신주발행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합병 등 경우에도 적
20. 2004641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12.27	소관위 접 수	-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보완(전자문서)
21. 2004644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0인)	12.27	소관위 접 수	-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 비치/공시할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2주간 전으로 변경
22. 2004888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12.30	소관위 접 수	- 보험사 귀책사유시 자살보험금 지급관련,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기타 상사채권처럼 5년으로
23. 2005111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17.1.17	소관위 접 수	- 상동
24. 2004888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17.1.25	소관위 접 수	- 형사사건 실행/집행유예시 이사 직 면직 등 자격제한
25. 2005406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17.2.2.	회부	- 보험금청구권 등 소멸시효 5년으로 변경

3. 거시적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중 회사편과 기타 법령

이 글에서 기업지배구조 라는 단어는 산업, 기업집단, 국민경제 내부에서의 소유지배 관계를 상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사법은 직접 연결점이 없다.

(1) 다만 몇가지 간접적 연결점들을 찾아보면,

① 다른 회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에 관한 특례 조항들이 있다.

-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상법 제342조의2)
- 상호주의 규제(상법 제369조 제3항)
-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업무조사권(상법 제412조의4)
- 모회사 감사의 겸직금지(상법 제411조)

② 어떤 회사의 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에 그 지시자에게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회사법 제401조의2)

③ 법 조항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되는 법인격부인의 법리

(2) 관련 규정들의 등장

- 1998.2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 1998.12 업무집행 지시자를 '사실상 이사' 로 규정(상법 제401조의2)
- 1998.12 회사정리 원인 제공 주주의 주식소각(회사정리법)
- 1998.4 자본금 10% 이상을 타 회사 출자 또는 채무보증시 공시(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 1999.12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후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 1999.2 유가증권신고서에 예측정보공시(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2항)
- 1999.2 분기보고서 제도 도입(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 1998.1 전자공시제도 도입(구 증권거래법 제194조의2)
- 2000.1. 공시의무 위반 제재 강화(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10조)
- 2000.2.11 공정공시제도
- 2004.4 공시서류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 인증 의무화
- 1999.12 이사회 4분지1 이상(대형 2분지1이상) 사외이사 제도 도입(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 2000.1 자산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 구성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 1998.1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외감법 제4조)
- 1998.1 감사인, 회계관계자 책임 강화(외감법 제19조, 제20조)
- 2004.4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6년) 의무화

III.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 개선: 백약이 무효

상법 중 회사편은 20여년째 빈번히 개정되어 왔다. 그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다. 실패로 판단할만한 결과는, 당장 **최근 1~2년내의 일만 회고할지라도 명료하다.**

- 2016년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대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를 자행했음이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경영 현황을 반영한 내부회계자료와 외부회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장부’ 까지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이 사건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을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같이 존재한다.¹⁵⁾

이 사건이 문제화된 원인 중에는, 미국이 엔론 사태를 교훈삼아 만든 서베인옥슬리 법상 회계법인의 연속수입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였던 것에 반하여, 한국은 채택 또는 모방하면서 제한기간을 6년으로 둔 것처럼 법제도 규율의 본질을 놓친 것도 문제이다.

- 롯데그룹은 93개 계열사를 선단식으로 운영하고 오너일가와 계열사 간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일감몰아주기, 비자금조성 등 2016년 상반기부터 각종 의혹에 휘말렸 왔다.¹⁶⁾

위와 같은 적지 않은 규모의 기업스캔들도 최근의 정치적 사태로 말미암아 빛이 바래고 잊혀져 가는 것이 당황스럽다. 다만 더 큰 스캔들임에도 사건이 가려질 뻔 하였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의혹사건은 바로 그 정치적사태로 인하여 재조명될 수 있게 되기는 하였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건(주주총회 결의일 2015.7.17.)¹⁷⁾¹⁸⁾

15) 전효진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 논란 대우조선해양, 이중장부 관리 사실 드러나”, 조선일보, 2016.10.28.18:47 입력. 등

16) 배석준 기자, “롯데수사 102일... 檢, 비자금-제2롯데월드 의혹 못 밝혀”, 2016.9.21. 03:00 입력 등.

17)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엘리엇은 합병목적의 부당성과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및 자사주 매각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면서 법원에 3건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하급심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 자2015카합80582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 자2015카합597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2. 자2015카합80896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7.16. 자2015라20485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7.16. 자2015라20503결정)이 있었다. ==> 이중 일부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가 이루어졌으며 사건은 계속 진행중.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15.5.26. 제일모직과 삼성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사회가 9월 1일자로 합병을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0.35에 삼성물산 1이라 하였다.

- 2015.6.1. 삼성물산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한 의결권자문 국내회사 서스틴베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두 회사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하였다. ==> 즉 반대하였다.

- 2015.6.4.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 보유 공시를 하였다. 동시에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하였으며, 합병조건도 불공정하여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달 9일 주총합병결의안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 2015.7.2. 세계 2위의 의결권 자본회사인 글래스 루이스가, 그 다음날(3일)에는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각각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반대 권고를 하였다.

- 2015.7.7.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 2015.7.17.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개최. 삼성물산은 83.57% 의결권 주식이 참석하고, 69.5%가 찬성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증권을 매수하려는 자가, 그 회사의 주가가 자신이 알 수 없거나 관여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¹⁹⁾

2. 정확한 용어사용: 재벌 또는 재벌총수

‘재벌’에 상응하는 경제력집중 문제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모든 주요선진국들도 보였었다, 오늘날 선진국에게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표출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경제민주화 과정을 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그것이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²⁰⁾

이 글에서 기업지배구조는, 전체적인 소유 형태를 말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직전 대선에서 화두가 된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로써, 최근에도 다수 나타났다.

재벌은 1970년대부터 줄곧 우리 사회 최대의 현안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어언 40여년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회전체가 이해관계인이 되어 끈질기게 논의해 온 예는, 재벌이라는 문제 외에는 찾기 어렵다. 이 문제는 재벌이 반격할 것이 많지 않은 일방향적 비판이면서도, 그간 노정된 재벌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²¹⁾

기업집단(corporate group, group of companies)같은 현상, 즉 법적·제도(형식)적으로는 독립한 다수 기업들이 경제·실질적으로는 공통의 지배권하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경영(unified group management under common control) 되는 것은, 20세기 이후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²²⁾

하지만 이는 실상 언어의 유희이다. 이 문제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재벌에서

합병안이 가결.

- 2015.8.6. 엘리트은 총 지분 7.12% 중 4.95%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삼성물산에 대하여 행사하였다. 한편 일성신약도 보유 하던 지분전체(2.37%)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삼성물산에 대하여 행사하였다. 매수가격 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소송 이 시작되었다.

-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격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016.1.27. 자2015비합91, 92(병합, 30037(병합)결정). 즉 1주당 **57,234원**.

-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소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시장주가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하며,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인 2014년 12월 17일)주당 **66,602원**으로 결정하였다.

18) 자료는 생략하지만,

제일모직은 합병이후 주가가 계속 올랐다. 전체 주식시장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올랐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주가가 떨어졌다. 정상적인 합병이라면 삼성물산 경영진은 시장과 반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합병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들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위 각주 서울고법 결정도 그러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것이다. 요컨대 제일모직은 가격을 뺀 것이고 삼성물산은 가격을 낮춘 것이다.

19) “**올바른 기업지배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 한국**, 지배구조 후진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세계 3위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사(APG)의 박유경 이사의 발언. 광정수 기자, “한국은 일본·중국보다 못한 지배구조 후진국”, 한겨레신문, 2015.7.12.10:16.

==> 이 박유경 이사의 발언은 APG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APG만의 견해가 아니며, 다른 유럽 거대연기금들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음을 다른 경로로 들어서 알고 있다.

==> 같은 기사의 내용 : APG 는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280만여명의 연금을 관리하는 펀드이다. 운용자산규모가 2014년말 기준 40303억 유로(약 500조원)로써 유럽 2위, 세계 3위권이다. 한국 국민연금 운용자산규모는 2015년 4월말 현재 491조원. 투자기업의 재무적 측면 뿐 아니라, 소위 비재무적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3요소(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원칙을 지키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투자규모가 가장 크고, 한국에도 100여 개 기업에 2조원을 투자하고 있었다고 하며, 삼성의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한다.

20) “성승제 외 1인, 경제민주화...”, 94쪽.

21) 성승제 외 1인, 경제민주화..., 80쪽

22) 김상조,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민주정책연구원, 2012.9, 1쪽.

경제민주화 또는 기업집단으로 변천하였다.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경제력집중은 더 심해졌다.²³⁾ 재벌이라고 직설적 표현을 사용할 때와 달리, 최근 경제민주화/기업집단이라고 부를 때, 재계는 반발하며 학문을 위장한 프리즘(왜곡)을 통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려는 장벽마저 설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기업집단, 또는 경제력집중 등 완화된 표현 또는 미화된 언어를 사용하면 핵심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고, 문제를 직시할 수 없다.²⁴⁾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도 기업집단은 있다. 다만 conglomerate은 핵심 선진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일반집중/시장집중/산업집중은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소유 집중의 문제는 선진국에게는 없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해법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소유 집중의 문제가 핵심이다.

3. Zaibatsu 해체에서 은닉된 사실: 일반집중·시장집중·경제력집중 외, 소유집중 해소

일본의 재벌해체조치의 내용 중에서 ① 지주회사의 해체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배제에 관한 사항은 국내에 비교적 자세히 알려져 있으나, ② 재벌가족의 기업지배력배제, 지주회사와 지정자보유 유가증권의 양수 및 처분, 회사증권보유제한령에 의한 주식의 처분 및 재벌의 상호·상표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²⁵⁾

이상을 한국의 재벌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본다면, 종래 재벌문제 중에서 일반집중과 시장집중은 상당히 논의되어 왔지만, **소유집중과 그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위 ②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재벌문제의 핵심이 일반집중에 있다고 본다면, 일본의 전후 사례를 관찰할 때에도 일반집중을 해소할 장치 즉,

위 ① 지주회사 해체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배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23) 각주1에 소개한 문헌에서 각종 경제력집중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그 소개를 요약하고, 그 이후에 연구된 보고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경제력집중 지표 악화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다.

일반집중(overall concentration) 즉 특정산업이나 시장을 초월하여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기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광업 및 제조업 일반집중을 조사를 참조하면,

출하액 기준 상위 200대 기업이 전체 광업 및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KDI, 『시장구조조사』, 2011.10, 공정위 연구용역보고서 39쪽 이하; 같은 KDI, 『시장구조조사』, 2010.10, 공정위 연구용역보고서 38쪽 이하 참조).

특히 2010년 KDI시장구조조사 41쪽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율**의 1981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정리된 장기추이를 본다면, 상위 100대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이 1995년 40.4% ==>2008년 51.1% 로 심화되었었다. 심지어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 장기추세를 요약하면, 소수기업에 대한 **일반집중율**은

- 1980년대 후반까지는 **완화/하락**(경제력집중 완화)하는 길을 걸었으나,
- 그 이후 1990년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경제력집중 악화/강화)** 되고 있다.

한편 2013년 같은 조사(KDI, 『시장구조조사』, 공정위 연구용역보고서, 2013.12)는 통시적으로 보지 않고 자료에 따라 대략 2000~2011년 사이를 조명하고 있다. 2000년대에도 해마다 **일반집중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44쪽 이하). 산업별 상위3사 집중률(CR3)도 연연세세 경제력집중이 **강화**되고 있다(56쪽 이하). 기타 수치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산업집중도**도 같아서 대규모기업집단이 점하는 출하액·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계열사·사업체** 수도 폭증하고 있다(123쪽 이하, 예컨대 표VIII-3 또는 표VIII-4 등). **반면** 대규모기업집단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미흡**하다(표VIII-4 및 127쪽).

24) 한국경제 문제점의 핵심은 몇 개인이 전체 경제를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선진국으로서 이러한 나라는 없다.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25) 위 권오승, “일본의 재벌해체와 그것이 한국 재벌정책에 주는 교훈”, 서울대학교 『법학』 245쪽.

반면 ② 소유집중과 그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즉 재벌가족의 기업지배력 배제와 지주회사와 지정자보유 유가증권의 양수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또는 일부러 회피한다).

과거 IMF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중요한 것이, **소유집중과 그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을 해결하지 않고는 재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의 재벌들은 (주로)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하여 소유·지배하면서 그룹 전체를 선단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위기에 물리게 되면 한꺼번에 침몰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이며, 때문에 당시 정부는 그 역작용을 해결하고자 **사외이사** 제도나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제도, 그리고 종래 형식적 장치였던 **대표소송 행사요건 완화**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²⁶⁾

IV. 에필로그 : 분석과 전망 - 시장의 회복이 필요하다.

1. 한국 연기금자본주의

(1) 요약

이 글이 당초 세미나에서 발표될 때에는 다른 필자의 글²⁷⁾을 전재하여 드러커의 저서²⁸⁾와 클라크의 논문²⁹⁾을 논제로 삼아, 이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고 그 주장들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주장하였다.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의 사외이사는 겉모습만을 모방한 것이다. 미국의 사외이사는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전체 근로자들이 각출한 자본을 운영하는 수천개의 연기금 등 자본단체들의 경영자들이, 자기들에게 위탁된 자본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최고의 순환적

26) 권오승, “일본의 재벌해체와 그것이 한국 재벌정책에 주는 교훈”, 서울대학교 『법학』 246쪽.

이 글은 이어서, ‘총수가 재벌을 지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이 최고경영자 자격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사권을 통하여 경영진의 의사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대부분 재벌들은 이 2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어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총수 개인이나 가족 또는 혈족의 영향력을 배제하여야 하고, 그러려면 재벌총수가 직접 또는 그 가족이나 혈족을 통하여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재벌 총수의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영스타일에 길들여져 온 가신 그룹들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 방안으로 일본의 재벌해체조치 내용 중에서 특히 재벌가족의 기업지배 배제조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7) 성승제, “연기금자본주의론의 서론적 고찰 -드러커의 연기금사회주의론과 클라크의 자본주의4단계론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7권 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6.12, 147~172쪽.

28) Peter Ferdinand Drucker, *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 Harper & Row(New York), 1976, (『보이지 않는 혁명』 (이규창 역, 단국대 출판부, 1981.7)으로 번역출간)

29) Robert C. Clark, "The Four Stages of Capitalism: Reflections on Investment Management Treaties", 94 *Harvard Law Review*, (1981).

이 글에서 클라크는 드러커가 사용한 Socialism 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op.cit. p.597). 아무튼 클라크는 드러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본주의 4단계설을 주창하였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정당성을 취득하였다.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은 전국 유일의 거대 국민연금을 만들었으므로 정부의 통제하에 놓인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그러한 단순한 조직구도는 재벌에게 유인되기 쉽다. 요컨대 자본주의가 이상적 모형으로 삼는 완전경쟁시장의 형성조건중 참가자의 다수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정보의 평등성이 침해된다. 즉 자본주의의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형평이 깨어진 분야는 또 있다. 클라크가 자본주의 4단계설에서 설과하였듯이 1단계에서는 회사법과 그 회사법제도 안에 대표소송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수주주권으로 하여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게 다가서기 위한 조건 중 시장참가자의 다수성 조건을 깨었고, 정보의 평등성 조건도 깨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의 현실은 아직도 미국이 걸었던 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히 말하고 싶다. 때문에 필자는 이것을 조명하고자 하였었다. 클라크의 미국 자본주의 4단계설 중 심지어 그 1단계도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

(2) 드러커의 연기금자본주의론과 경제민주화

이하에서 부연한다. 드러커의 1976년 저술인 『보이지 않는 혁명』은, 미국이 연기금자본주의의 길에 올라섰음을 설명해주었다. 연기금자본주의는 미국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이 전국민이 대부분 참가하여 각출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미국의 수많은 연기금들이 지배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드러커는 이를 연기금사회주의라고 불렀지만 클라크가 지적했듯이 적절한 용어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드러커가 그렇게 부른 이유는 추측컨대 두가지 중 하나이다. 하나는 드러커가 국민 대부분이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각출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싶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드러커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연기금자본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드러커의 연기금사회주의론은 국민에 의한 국내 기업의 지배가 중간자인 연기금에 의하여 수행되며, 드러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³⁰⁾인데, 미국 연기금자본주의는 연기금 경영자들이 그들의 투자 대상 회사들을 그 회사들의 사외이사로서 monitoring 하는 경우가 많다. 사외이사로서 연기금 경영자들이 참가하는 것은 그들이 monitoring 하는 것의 정당성을 현실에 구현한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의 사외이사가 그러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미국의 그것이야말로 드러커가 표현한 국민의 자본주의 (Peoples' Capitalism)³¹⁾에 해당한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양하다. 그 중 한 가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30) 드러커는 아직도 Wall Street Rule이 말하는 소위 (한국 속담에 비유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격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본문 중 밝히고 있지만, 미국도 연기금의 경영관여는 1980년대에 본격화하였다. 이 점에서는 드러커도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측면은 있는 셈이다.

31) “1950년 GM이 연기금이라는 대역사를 시작할 때, 뉴욕 증권거래소는 미국의 대다수 임금소득자를 ‘자본가’로 만들고 월 스트리트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주식소유자로 만드는 소위 ‘국민의 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라는 프로그램을 선언하였다. ...중략... 오늘날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증권거래소가 희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가 되어 있다(When General Motors, around 1950, set off the pension fund avalanche, the New York Exchange had just proclaimed a program called "Peoples' Capitalism" to make the great majority of American wage earners "capitalists" and owners of common stock through the Wall Street mechanism, ...omit... A far larger number of Americans are "owners" - or rather, legally, "beneficial owners" - of common stock than the Stock Exchange ever hoped for.)” P. Drucker, *supra* note 28, p.69(『보이지 않는 혁명』, 70쪽. 이 역서는 peoples' capitalism을 ‘대중자본주의라고 그리고 beneficial owner를 ‘혜택을 입는 소유자’로 번역함)

외국인투자자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과도하며 이는 위와 같은 경제의 순환적 정당성 구축이 불가해진다는 점을 아프게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들의 사외이사가 현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누구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만 던진다면 필연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자본 시장에서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 자본참여를 많이 한 연기금 또는 그들의 경영자들이 역할을 맡는다.³²⁾ 그러므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를 monitoring 할 가장 정당하고도 필연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자일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미국의 사외이사들은, 연기금 경영자들일 경우 사외이사로 봉직하는 회사를 잘 monitoring 할수록 그들이 경영자로서 운영하는 연기금들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명예와 실적을 높이고 부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이만큼 효율적이고 정당할 수 있는가.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이처럼 정당성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자본시장에서의 순환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전술한 순환적 정당성을 갖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외이사 시스템은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드러커는 그것엔 관심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사실상 전국민인 근로자에게 기업이윤 대부분이 귀속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였다. 전술과 같이 미국이야말로 관료조직이나 민간 거대소유자들에 의한 낭비나 경제력집중을 최소화하고, 전국민 대부분인 근로자들이 적립하는 연기금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어디론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대부분 국민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자본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드러커는 거듭 강조하였다. 특히 유럽에서 자주 시도되었던 전국 유일의 연금기금은 해당 국가들의 대부분 회사의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필연적으로 그 연기금들은 소유한 주식들을 사고 팔 길이 봉쇄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과나 연금수익자들의 이익은 동결된다는 앞서의 드러커의 지적은 작금의 국민연금 사태에 깊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정리한다.

첫째 미국의 연기금자본주의는 사외이사를 고안해내었고 그것 또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등 각종 condition 들은 법률이 아닌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둘째 미국 연기금자본주의 하에서 사외이사는 가장 순환적 정당성을 갖추고 투자대상인 국내 기업들을 가장 잘 monitoring 한다고 본다.

셋째 드러커가 강조하였던 것은, 사실상 전국민인 근로자들에게 기업이윤 대부분이 귀속하는 경제민주화가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셋째-① 필자가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주주배당을 확대하면 국민들의 연금소득이 증대한다. 한국의 경우 시가총액대비 비중이 높은 외국인투자자들이 3분지1을 획득하고, 다른 3분지1은 재벌 및 그 계열사들이 획득한다.

셋째-② 필자가 또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법인세를 낮춘다면 국민들의 연금소득이 증대한다. 한국의

32) 드러커는 이를 수탁자로서의 행위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연기금의 경영관여를 이해하지 못하는 Wall Street Rule의 관점에 사로잡힌 탓이라는 점은, 전술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도 은행들이나 삼성전자처럼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규모공개회사들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들어서야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에 가까운 모습을 뿜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아이러니한 것인가.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오우너 및 그 계열사들이 도합 3분지2를 획득한다.³³⁾ 아무튼 법인세 징수는 다시금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기업이윤 대부분은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환류한다.

(3) 클라크의 자본주의 4단계론과, 한국 완전경쟁시장 모형으로의 접근실패의 비교

클라크는 필자가 생각건대 드러커의 연기금사회주의론에 영향받아서 미국의 자본주의 4단계설을 구상해내었을 것으로 본다. 역시 1981년 클라크의 논문이 주장한 자본주의 4단계설은, 오늘날 연기금 자본주의라는 표제하에 자본주의 5단계설로 확장되어 주장되기도 한다.³⁴⁾ 클라크의 자본주의 4단계설 중 1단계는 회사법의 제도정비가 기틀을 갖추는 때이다. 미국은 산업혁명기 즉 산업화 초기부터 대표 소송의 단독주주권 원칙을 갖추고 소수주주권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었다. 그러함으로써 미국 자본 시장은 초기부터 누구도 투하자본의 비정상적인 손실을 방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미국은 안심하고 모여드는 투자자들을 모아 자본시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기업의 규모가 보다 대형화한 2단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연방 증권법상의 여러 제도를 발전시켰다.

클라크의 미국 자본주의 4단계설은 어언 발표된지 37년이나 지났지만, 한국은 그 중 1단계와 2단계도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건에 대한 국민연금 찬성은 잘 검토해보아야 할 일로 떠오르고 있다.

2.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사외이사는 거수기

이 글은 후술과 같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면서, 행사되어야 하는 의결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산업, 기업집단, 국민경제 전체적 의미의 소유지배와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회사법적 검토사항들을 개관한다.

주로 사외이사 제도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와 대조한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州 별로 회사법제정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 거주자 소득 등을 위하여서라도 각 州 는 규제가 적은 회사법을 채택하는 경쟁이 생겼다(bottom to the race). 따라서 회사법은 기업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할 법적수단일뿐 투자자보호의 법적 수단이 될 수는 없었다.

미국은 종업원연금법(ERISA)에 따라 연기금 등에게 투자를 위탁하는 등 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 자본들을 운영하는 수많은 미국의 연기금들은 투자수익을 높여야만 그 경영자 등은 성과와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결과 수많은 미국의 연기금들은 홀로 또는 단체로 미국 내 증권거래소 들(뉴욕거래소, Nasdaq 등)을 압박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기업들을 견제하고 monitoring 할 수 있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등의 결격요건 등이 다 포함된다.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법인세가 더 낮다.

34) Gordon Clark, Pension Fund Capitalism, Oxford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Studies S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09 March. 2000.; Gordon L. Clark and Tessa Hebb, Pension Fund Corporate Engagement: The Fifth Stage of Capitalism The Social Regulation of the Global Firm (2004 Winter), Vol. 59, No.1. pp.142-171.

즉 법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율규제·연성규범(soft law) 형태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으로써 시작하였다.³⁵⁾

나아가 이미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경영자 지배현상이 나타났다. 주식 분산이 이루어져 적은 비율의 주식을 보유할지라도 대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경영인 인력시장이 형성될 정도이며, 이들 전문경영인들은 CEO가 되려면 많은 주식의 의결권을 확보하여야만 될 수 있었다. 때문에 위임장 쟁탈전도 하기도 하고, 마치 정치적 선거운동처럼 CEO가 될 경우 기업운영 방향을 주주들에게 광고·선전하기도 하지만, 거액을 투자한 연기금들과 손을 잡는 것이 CEO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거액을 투자한 연기금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로 초빙한다. 연기금들의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실적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금의 성과와 성장 또는 추락이 좌우되므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monitoring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연기금들이야말로 투자대상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활동할 정당성이 가장 높은 자들이다.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투자대상기업의 monitoring이 이루어질수는 없다. 정치에 비견한다면 간접민주정치가 가장 효율적인 상황에 비견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유럽 諸國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며, 단순히 사외이사라는 외형적 형태의 outsider director 제도만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외이사와는 근본적으로 같지 않으며, 종래 비상임이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종래 비상임이사는 소위 Owner가 덜 중요한 기업을 가끔 챙겨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와는 결격요건의 차이는 있겠다.

3. 미국 자본주의시스템(사외이사과 기업 monitoring) 보다 효율성이 미흡하여 유럽에서 나온 보완적 제도들

(1) 기업의 사회적책임론

-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론은 주로 인권법 관련하여 제3세계 하청공장에서 저임금 아동여성노동 착취를 예방하려는 등의 용도에 사용될 뿐이다. 이미 비교적 잘 monitoring이 작동되는데 굳이 2중 3중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는 탓이다.
- 그러나 한국은 그 수준이 아니므로 당연히 기업의 사회적책임론이 보조적 장치로서 활용될 필요가 높다.³⁶⁾

(2)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는 요컨대 ‘기관투자자의 행동준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상케를 벗어난 기업경영을 monitoring을 하려는 것이다. “Wall street rule(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정도의 의미, 그 회사가 싫으면 팔고 떠나라)”이 적용되기엔 기관투자자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팔고 떠나면 크나큰 평가손을 볼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에서, 기업경영자와 대화를 통하여 동반자 파트너십을 맺어서 성공적인 대화형 monitoring을 하려는 사회적 제도. 역시 미국처럼 선순환형 사외이사 제도가 정착된다면 굳이

35) 상제는 성승제, “상장규칙의 기업지배구조 조정 기능”, 『법학논총』(제22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12 참조.

36) 사회적책임에 대해서는, 성승제,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10. 참조.

필요 없을 제도이다. 영국에서 시발하여 유럽 각국에서 채택되고 있다. 일본 기타 몇 개 개도국들도 택하였다. 한국은 논란 끝에 불발된 상태이다.

- 역시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작동기능이 유럽 수준도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보조적 장치로서 필요성이 높다.³⁷⁾

(3) 노동이사제

역시 서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제도이지만, monitoring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정도의 제도. 역시 한국은 유럽 수준도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조적 장치로서 필요성을 구할 수 있다.

4.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및 다중대표소송

한국에서 대표소송이 형해화되어 있다는 점은 일찍이 지적되어 온 바이다.³⁸⁾ 그런데 대표소송은 실로 한국상법 제정시부터 인정되어 온 제도였다. 그런데 심지어 IMF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단 한 건의 소송도 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예가 없을 정도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는 종종 발생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법적인 장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대표소송은 영국 형평법상의 제도로 출발하여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본래 대표소송은 단독주주권이 원칙인데, 한국 상법제정 당시 이를 살짝 비틀어 소수주주권(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소송을 제기할 소송당사자적격이 생기도록 하였다. 소수주주권으로서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은 100분지1 이상의 주식보유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 10,000분지1 이상)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사실상 死文化된 조항으로 되었다. 대표소송에 관한 원고적격을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당초 한국 상법전 제정 당시의 일본 상법전의 예를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상법은 이미 1950년부터 1989년까지 40여년간 단 10건의 대표소송이 제기된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고자 개정되었다.³⁹⁾ 즉 1993년 일본 상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에서도 일본이 본받은 미국처럼 단독주주권(한 주만이라도 보유한다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으로 되었다.

영리법인인 회사가 추구하는 영리활동은 기업의 행위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회사 규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한국은 위로부터의 개혁과 주동에 의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해온 역사적 경험이 있다. 사실상 혁혁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향후의 개혁을 막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은 기업활동규제에 대한 방법론을 규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때로는 여론에 의한 임의적 수사의 방법으로 해결한 적도 있었다. 공권력은 할 일이 많다. 공권력이 기업활동에 관여하게 되면, 기업경영자들은 오히려 정치자금 제공에 신경을 쓰거나 영리활동과 불가분인 기업활동의 안위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어느 정도 정경유착의 가능성도 배태될 수 있다.

37) 스튜어트스콧에 대해서는, 성승제, 『스튜어트스콧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6.7. 참조.

38) 예컨대, 김진식,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37권 2호), 1996. 164쪽.

39) 김진식 앞의 글 166쪽. 그에 비하여 당시 1993년 대표소송 건수 84건, 1994년 145건, 1995년 174건으로 40여년간 10건 제기된 것에 비하여 증가하기는 하였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보호는 그러므로 시장 기능에 의하여 scan 이 이루어지고 monitoring 이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다수의 감시자를 풀어놓는 것이 좋다.

5. 시장기능의 회복

① 전술처럼 사외이사를 그 회사와 무관한 사람들이 맡는 것은, 그 사외이사를 수행하는 자들이 그 수행상 발생하는 얼마 안 되는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할 여지를 준다. 미국의 경우처럼 순환적으로 당연히 해당 회사를 감시할 책무와 유인동기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에 대해서는 V부터 VII까지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② 대표소송은 시장기능을 부활하기 위한 첫 번째 유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초원의 하이에나를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표소송을 주로 운용하였던 나라인 미국처럼 단독주주권으로 풀어놓는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그 중에는 하이에나도 섞여 있겠지만 초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기업도 훨씬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다. 가장 흔히 주장되는 남소의 위험성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서처럼 “경영판단의 법칙”이 작동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경영활동에 대한 면책의 법리가 관철되는 등으로 경영자도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 적지 않게 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2011.3.
- 권오승, “일본의 재벌해체와 그것이 한국 재벌정책에 주는 교훈”,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 2001.
- 김진식,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37권 2호), 1996
- 김상조,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민주정책연구원, 2012.9
- 드러커 저/이규창 역, 『보이지 않는 혁명』, 단국대 출판부, 1981.7
- 맥스 사피로 저, 『권력과 인플레이』, 둥지, 1982.
- 성승제 외 1인,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10
- _____,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12집 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12
- _____,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12
- _____,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10.
- _____, “상장규칙의 기업지배구조 조정 기능”, 『법학논총』 (제22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12
- _____, 『스튜어드십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6.7
- _____, “연기금자본주의론의 서론적 고찰 -드러커의 연기금사회주의론과 클라크의 자본주의4단계론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7권 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6.12
- _____, “재벌 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사법연구』 (25권 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
- _____, “충부채 관리 재정운용과 법정책”, 『행정법연구』, 한국행정법학회, 2016.9,
- 시장경제연구원, 『시장구조조사』, 2006년, 2008년 각각
- 유득준, “기업의 자본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1981
- 찰스 페인스틴/피터 테민/지아니 토니올로 저/양동휴 외 2인 역,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 동서문화사, 2008.11
-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구조조사』, 1999년, 2001년, 2003년, 2010년, 2011년 각각.
- 神田秀樹, “獨立役員制度の意義と期待される役割”, 憧憬證券取引所 編, 『獨立役員の意義と役割』 (別冊商事法務 第377号), 2013.5
- Gordon Clark, Pension Fund Capitalism, Oxford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Studies S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09 March. 2000.; Gordon L. Clark and Tessa Hebb, Pension Fund Corporate Engagement: The Fifth Stage of Capitalism The Social Regulation of the Global Firm (2004 Winter), Vol. 59
- Keynes, J. M.**, *Essays in persuasion*, London: St. Martin's Press, 1973(1931)
- Peter Ferdinand Drucker, *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 Harper & Row(New York), 1976
- Robert C. Clark, "The Four Stages of Capitalism: Reflections on Investment Management Treaties", 94 *Harvard Law Review*. (1981).
- Thomas Arthur Bisson, *Zaibatsu Dissolution in Japan*, of California Press 195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 자2015카합80582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 자2015카합597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2. 자2015카합80896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5.7.16. 자2015라20485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5.7.16. 자2015라20503결정
- 곽정수 기자, “한국은 일본·중국보다 못한 지배구조 후진국”, 한겨레신문, 2015.7.12
- 배석준 기자, “롯데수사 102일... 檢, 비자금-제2롯데월드 의혹 못 밝혀”, 2016.9.21
- 전효진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 논란 대우조선해양, 이종장부 관리 사실 드러나”, 조선일보, 2016.10.28.18
- <http://www.hankookilbo.com/v/05689709c2534d3493a44a7cb309575e>

토론문 3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고창현(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공청회 토론자료

변호사 고 창 현

1. 자문, 연구용역 제공 관련

- 미국 (각 주법, 거래소 상장규정), 영국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독일 (증권주식회사법), 일본 (회사법) 등의 경우 일회성/비정기적 자문이나 용역 제공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사례 없음.
- (ㄱ) 개인인 경우 자문, 용역의 대가가 일정 규모(금액이나 수익 비중 등 고려) 이상인 경우 당해 개인, (ㄴ) 법인/단체인 경우 자문, 용역의 대가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파트너, 주주 또는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로 규정. 즉, '거래 규모', '소속 법인/단체에서의 지위' 등을 함께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
- 참고: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1.34
로펌은 "primary legal adviser to the corporation with respect to general corporate or securities matter"인 경우 주요한 이해관계 (significant relationship)가 있다고 봄.
(설명: "In some cases a corporation looks to a number of firms for general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advice, none of which gives more than a minor share of such advice. In other cases, virtually all such advice is rendered by in-house counsel. In either type of case, no law firm would be the corporation's "primary legal adviser" within the meaning of § 1.34.)

2. 사외이사 전문성 관련

- 2017년 Fortune 500의 10대 기업(Walmart, Berkshire Hathaway, Apple, Exxon Mobil, McKesson, UnitedHealth Group, CVS Health, General Motors, AT&T, Ford Motors)의 사외이사 수는 91명으로 한 회사당 평균 9명(9.1명)임.
- 사외이사의 직업을 보면 전,현직 기업인이 72명, 교수/연구원이 11명, 기타(전직 관료/정치가/회계사 등) 8명으로, 전,현직 기업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현행 상법과 시행령상 기업(금융보험업 포함)에 종사하거나 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아온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예) “해당 상장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3. 사외이사 겸임 제한 관련

- 사외이사가 겸임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 다만, 독일의 주식법상 감독이사를 겸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수는 10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모범규준 (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상 상장회사의 감독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 회사의 수는 3개로 제한하고 있음.

- 일정 수 이상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싱가포르).
- 2017년 Fortune 500의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91명 중 39명 (약 43%)이 3개 회사 이상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음.

4. 사외이사 재임기간 제한 관련

-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 다만,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는 사외이사 재임기간을 9년으로 제한.
- 2900개 미국 기업에 대한 IS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 정도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내지 15년이라고 함.
- 2017년 Fortune 500의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91명 중 40명 (약 44%)이 2010년 이전에 당해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음.
- 전경련이 2014년말 기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95개 비금융업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2.8년이었음.

5. 사외이사 외부평가 관련

-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의뢰기관의 공신력과 평가 기준의 합리성 및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현실적으로 적합한 사외이사의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형사처벌 신설 관련

- 이행 담보방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형사처벌 과잉화 우려 있음.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선임의 경우 이는 금융감독원 보고 사항이고 금융감독원 검사 시에도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사항으로 감독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

토론문 4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설광호(준법감시협의회장)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에 관하여

먼저, 국제적 트렌드나 국내적으로도 준법경영이나 윤리경영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시장이나 소비자 신뢰를 받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준법경영은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도 다양한 법령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1) 사외이사에 관하여

사외이사를 정의하면서 경영진의 전행방지 및 제3자의 입장에서 회사 경영을 견제·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하였는데, 회사 경영을 견제·감시하거나 조언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외이사의 경우 자격으로 각 종 이해상충 등을 고려 결격사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예컨데, 건설/제약/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려면 건설/제약/금융 관련업무에 몇 년이상 근무한 요건을 두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교수, 판사나 검사 출신의 전관법조인이 그 회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그 회사의 사외이사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을 견제·감사하고 조언을 잘하면 임기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외이사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외이사의 임기 조정이나 로펌의 경우 자문계약뿐만 아니라 송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신사업에 진출시할 때에는 특히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외이사가 단기로 임명되면 투자의사결정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반대를 하거나 참석 자체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렵고, 그러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사외이사라도 경영진의 전행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높은 사람을 선임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임적 행위 등을 사전예방하고, 사전예방을 하지 못해 배임적 행위 등이 문제되면 사외이사도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2) 지배주주의 전횡방지에 관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금융회사에 있다 보니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규를 비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 특히 상장회사나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회사에도 횡령/배임/뇌물제공/자본시장법상 일정 범죄(미공개중요 정보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분식회계/조세포탈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처럼 일정기간 이사,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업무집행지시자)가 되지 못하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진 스스로 준법경영을 하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사기업이라도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5천만원 이상 돈 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함)에 의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억 이상 돈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돈 받으면 판사가 작량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최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1억 돈 받으면 최소 5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50억 이상, 심지어는 수백억 이득을 보더라도 특경가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 판사가 작량감경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전횡방지나 횡령/배임/조세포탈/부당내부 거래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법정형을 7년이상으로 하거나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회계투명성 강화에 관하여

회계투명성을 위해 내부관리회계시스템 구축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강화됨은 물론 일정 요건시 감사인 지정도 필요하지만, 외부 회계법인을 감사위원회가 실제 선임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부 회계법인을 감사위원회가 선임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경영진에 의해 선임되고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을 감사위원회가 선임해야 하고, 보수나 기간 등을 감사위원회가 결정

하고, 외부감사결과를 경영진이 보고 받기 전에 감사위원회가 보고 받고 불투명한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재감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면 회계적 측면에서 견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실제 적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준법지원인 선임에 관하여

비상장 기업이 기업을 상장하는 이점도 적어지는 것 같고(전에는 비상장회사는 자기자본의 4배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규제가 없고, 자기주식 취득도 상장회사가 같게 됨),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전환하고, PEF(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로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을 상장회사만 두게 하면, 상장회사보다 자산규모나 매출액 등이 훨씬 큰 비상장회사가 제외됩니다. 준법경영도 자산규모나 매출액 등에서 훨씬 큰 비상장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지원인을 상장/비상장 구별없이 자산규모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준법감시인 정도의 자격 요건을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준법감시인이나 준법지원인 모두 사내이사나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더라도 실제 직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업무집행책임자라도 실제 직급이 낮으면 내부통제업무를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5) 준법경영을 위한 인센티브에 관하여

미국의 경우,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법인의 형사처벌시 벌금형을 대폭 인상하면서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연방양형가이드라인’으로 벌금을 필요적으로 대폭 감경하여 준법경영을 유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고,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을 받게 되면 과징금, 시정명령, 직권조사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처벌이나 개별법령에 의한 징계시 내부통제체계가 잘 구축된 경우 처벌이나 징계의 감면요소로 규정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적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벌/징계시 준법경영 유인을 위한 법규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 정부부처의 징계 양정기준이나 기소원칙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 준법경영의 시스템적 점검에 관하여

제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경영을 위한 각종 제도나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면서 임직원 교육을 하면서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사건/사고가 많은 것은 횡령 등 사건/사고에 밀접한 업무를 하기 때문이고,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수시로 검사나 점검을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검사나 점검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드러난 경우 이외에는 사건/사고가 있더라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기업 경영에 과한 간섭이 아니라면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여 시스템적 점검체계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마지막으로

횡령, 배임, 불공정한 거래로 시장이나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분야가 아닌 경우인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것 같고, 법규적으로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면 법규위반자를 양산하면서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창의성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나 부패를 줄이는 방안에서도 규제 합리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5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방안

- 사외이사제도를 중심으로 -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권오인

I

들어가며

- 재벌 및 대기업의 사외이사 비중이 50% 정도나 되는 상황에서, 작년 말 재벌들의 국정농단과 같은 불법경영, 비윤리경영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만큼,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 등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 나아가 재벌 총수일가와 같은 지배주주들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준법경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과 준법감시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개선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외이사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II

사외이사제도의 문제

■ 의사결정의 독립성 결여(거수기 논란)

-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16.4.1. 지정된 대기업집단(65개) 중 '16.9.30. 지정기준 변경(자산기준 5조 원→10조 원, 공기업집단 제외)등을 반영한 26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26개 민간 대기업 집단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추이

(단위: 명,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외이사 수	680	703	772	776	758	750	547
상장회사 전체 이사 수	1,469	1,481	1,592	1,594	1,528	1,516	1,089
사외이사 비중	46.3	47.5	48.5	48.7	49.6	49.5	50.2

주) '10~'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16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임
자료) 공정위의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분석·발표 보도자료(2016. 12. 23)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 2016년에는 총수 있는 집단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표2> 26개 집단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추이

(단위: %, %p)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체집단	86.6	87.8	90.6	91.1	93.0	92.5	94.8
총수있는 집단(A)	86.1	87.2	90.1	90.7	92.6	92.1	94.8
총수없는 집단(B)	94.6	95.2	96.4	95.0	96.3	95.8	94.6
차이(A-B)	△8.5	△8.0	△6.3	△4.3	△3.7	△3.7	2.0

주) '10~'15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16년도는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자료) 공정위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분석·발표 보도자료'(2016. 12. 23)

- 사외이사 비중과 이사회 참석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안건처리 과정에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됨.
-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상장사(165개 사)의 이사회 안건 3,997건 중 가결 건수가 3,981건(99.6%) 임. 반면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0.40%)에 불과함.

<표3> 26개 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안건	가결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				
		부결	조건부 가결	보류	수정의결	소계
3,997	3,981 (99.60%)	2 (0.05%)	3 (0.08%)	6 (0.15%)	5 (0.12%)	16 (0.40%)

자료) 공정위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분석·발표 보도자료’(2016. 12. 23)

○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안건이 기업의 건전경영과 관련하여 반대할 수 없이 완벽하던지, 이해관계에 얽혀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로 일명 ‘거수기’ 역할과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됨. 전자 보다는 후자라고 판단 함.

- 이해관계에 얽힌 독립성 문제는 경제개혁연구소의 2017년 4월 경제개혁리포트에 게재된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5-2016년)’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임.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계열사(2016년 기준)의 22.91% 정도가 이해관계(계열사출신, 전략적 제휴, 소송 대리 및 법률자문, 정부 및 채권단, 기타, 학연)에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감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비중이 분석 대상의 45%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황을 볼 때, 권익위가 문제는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고 판단 됨.

- ▲지배주주 등의 견제 및 감시가 불가능한 선임구조, ▲후보 추천 방식 및 연임규정 미비로 독립성 결여, ▲활동내역 평가 관련 책임성 담보장치 미비 등

■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부재

- 현 사외이사제도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우호세력으로 구성되어, 이들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결여

-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이사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없어져,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음. 사외이사 제도가 무력화 된 상황에서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III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1. 권익위의 개선방안에 대해

- 권익위는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방으로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안을 제안하고 있음.
 - 법조인 사외이사, 대학교수 사외이사, 사내출신 사외이사 등에 대해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음.
 - 금융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위원 구성시 CEO 등 경영진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

- 사외이사간 상호추전 금지 규정 신설
- 사외이사 장기 연임 방지를 위한 연임 규정 명확화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 규정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확인시 처벌규정 신설

○ 셋째, 사외이사 책임성 담보장치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음.

-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를 관계기관 (주총, 금감원) 보고 의무화
- 상장회사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주총 보고 의무화
- 연임(2년이상)하는 사외이사에 대해 내부평가 외 추가로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의무화(외부평가 의뢰기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금융연구원, 서스틴베스트 등)
- 연임 사외이사의 외부평가 실시 결과에 대해서도 주총 또는 금감원 보고 의무화

○ 이상과 같이 권익위가 권고하는 방안이 수용되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권익위의 개선방안 만으로는 부족함.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회에 계류된 입법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 됨.

2. 정책 제언

○ 공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

- 사외이사제도를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회의 법안발의, 최근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에서 대부분 나온 상황임.

<문재인 대통령 지배구조개선 관련 공약>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를 도입
-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

<법무부 법무행정 쇄신방향, 2017. 10. 19>

1.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추진

-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상법」개정 필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우선 추진 및 법무부안 제시 검토하여 국회 논의 적극 지원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적극 검토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

-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 간 협력, 국회에 대한 적극적 설득을 통해 제도개선 성과를 이뤄내야 함.
- 특히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정책 수단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함.

○ MOM Rule의 적용 고려

- 총수일가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한 Majority Of Minority (MOM)Rule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함.
-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선임, 보수, 계열사간 합병 등에 원칙을 적용
 - *ex) 소수주주 추천 사외이사 최소 1인 이상 선임(국회 상법개정안 계류) 등

토론문 6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박경준(시민권익센터 위원장)

MEMO

MEMO